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34호

2017. 10. 26.(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2175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7-2181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7-2189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7-2194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6
제2017-2202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 고 시

제2017-37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
제2017-37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12
제2017-3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 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2
제2017-377호 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2
제2017-378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엄리2) 및 지형도면 고시	40
제2017-37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 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9
제2017-38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65
제2017-381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5
제2017-38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1

◆ 공 고

제2017-2170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90
제2017-217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93

제2017-2174호 2018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공고	94
제2017-217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03
제2017-218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04
제2017-2190호 정보통신공사사업 신규 등록 공고	106
제2017-2195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109
제2017-219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09
제2017-2201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을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결정」](안) 및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10

◆ 구 고 시

제2017-92호 도시관리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112
제2017-93호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 변경(폐지) 결정 고시(중구)	115
제2017-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116
제2017-11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노원구)	120
제2017-1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124
제2017-1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124
제2017-7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양천구)	125
제2017-101호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강서구)	126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	127
제2017-140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	128
제2017-1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133

◆ 구 공 고

제2017-1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강북구)	135
제2017-8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근린공원내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내 사유지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136
제2017-138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강서구)	142
제2017-18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147

◆ 사업소고시

제2017-20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49
------------------------------------	-----

제2017-2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49
------------------------------------	-----

◆ 기 타

제2017-22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0
제2017-22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0
제2017-2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1
제2017-22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1
제2017-23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2
제2017-2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2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75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정비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간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3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담당관(전화: 02-2133-2856, FAX: 2133-1073, E-mail: parkdo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81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내 정수운영과가 행정관리팀과 정수운영과로 조직개편되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직지정에서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을 정수운영과장에서 행정관리팀장으로 개정(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참조: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237, FAX: 3146-1209

- E-mail : sh060218@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89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 가. 교육훈련비 징수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 나. 교육훈련비 징수 금액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제한
- 다. 징수된 교육훈련비는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 환급
- 라. 교육훈련비 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학자격 등)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5463, FAX : 02-768-8851

- E-mail : ncy11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94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조)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4층 현장대응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전화 : 3706-1716, FAX : 3706-1719, E-mail dacapo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02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2조)

- 나.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3조)
- 다.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라.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5조)
- 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역사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도심재생과 (전화: 02-2133-7732, FAX: 02-2133-0742, E-mail: leemc@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내 문화시설을 신설하여 청소년과 주민의 평생교육 증진 및 복지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문화 시설	공공 도서관	광진구 자양동 594번지		증)3,500	3,500	-	유수지 중복결정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신설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3,500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문화시설	○ 공공도서관 신설 - 면적 : 3,500㎡	○ 유수지내 공공도서관(부대시설: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광진구 자양동 594번지	11,630	감)2,474	9,156	서고1996-41호 (1996.3.7)	유수지 중복결정

○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면적 : 11,630㎡ → 9,156㎡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을 현황 주차장면적으로 변경하여 체계적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모

다. 도시계획시설(유수지)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수지	유수시설	광진구 자양동 594번지	18,235.5		18,235.5	건공25호 (1972.3.28)	유수지 중복결정

라. 지형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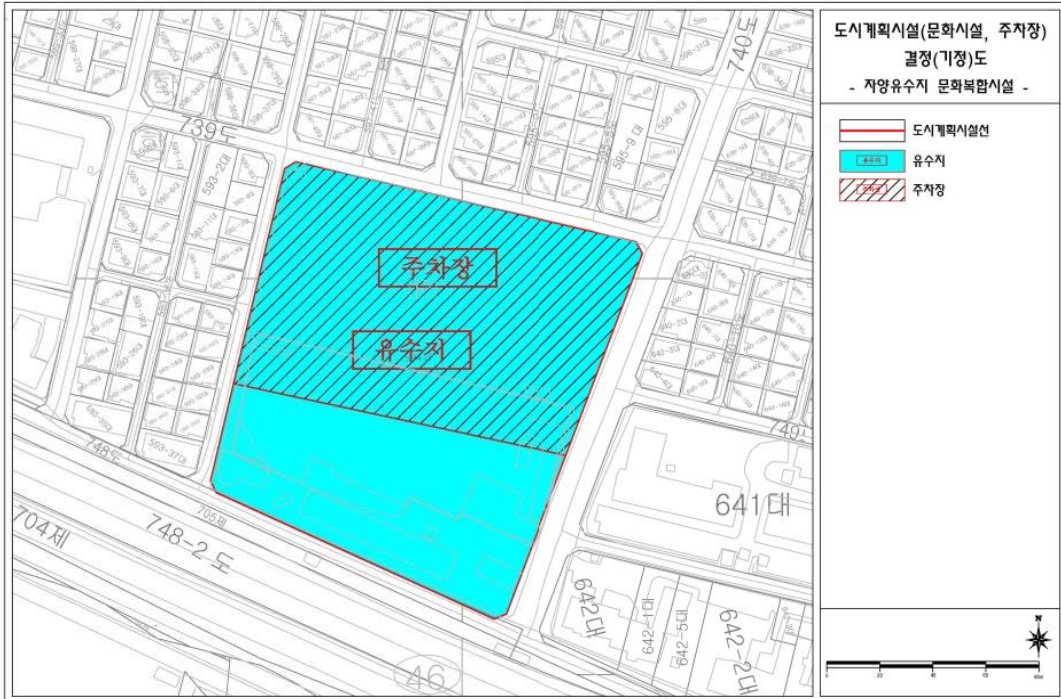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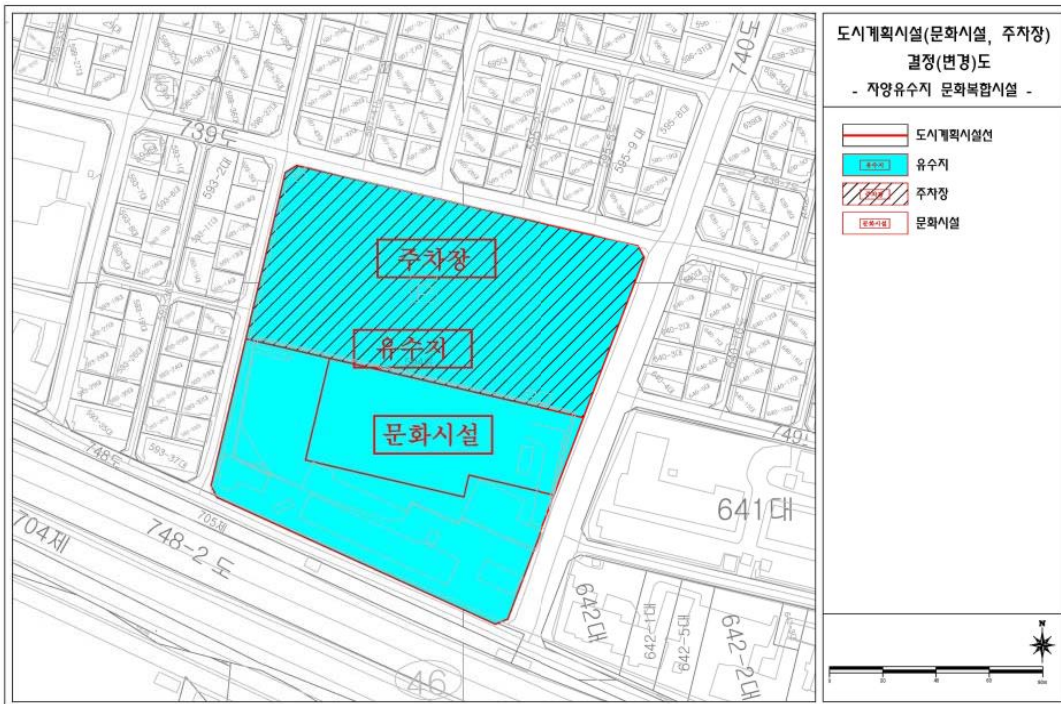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8)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7685)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예능	주소
제17호 은공장	이정훈	남	1935.4.3	은공예	강서구 공항대로39길 (이하 생략)

2. 해제일 : 2017. 9.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2-2133-2616

나. 전송번호 : 02-2133-1062

다. 연락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4-41호(1984.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99호(2017.3.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밤고개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944호(2017.8.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토지의 보상과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경미한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8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와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밤고개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16-31 ~ 강남구 수서동 729-1

3.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6 → 7 ~ 8차로, 연장 1.85km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까지

6.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7	30 (47)	보조 간선 도로	3,750	수서동 142호 광장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건고시 41 (84.2.14)	밤고개로
변경	대로	2	27	30 (59)	보조 간선 도로	3,750	수서동 142호 광장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일부 폭원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규 모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수서동 735	17,664.8	감) 152	17,512.8	건고 26 (90.2.2)	밤고개로 확장공사로 인한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규 모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	세곡동	38,838.59	감) 1,934	36,904.59	서울특별시 360 (79.8.9)	밤고개로 확장공사로 인한 변경

7. 변경사유

- 밤고개로 확장공사 설계변경 및 비탈면 반영으로 인한 일부폭원변경(폭 30~47m → 30~59m), 주차장 면적감소(17,664.8㎡ → 17,512.8㎡, 감152㎡), 공공공지 면적감소(38,838.59㎡ → 36,904.59㎡, 감1,934㎡)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8. 관련도면 : 별첨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수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10.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7)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87)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	서울	강남	세곡	-	116-31	도	255	11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1
2	서울	강남	세곡	-	122-14	도	4,851	12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
									서울특별시		
3	서울	강남	세곡	-	116-28	대	3	3	송파단위농업 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마천동 115-4	3
4	서울	강남	세곡	-	102-33	대	3	3	서울특별시		4
5	서울	강남	세곡	-	98-1	도	3,160	883	서울특별시		5
6	서울	강남	세곡	-	116-2	도	231	231	이우종	광명시 하안동 296 고층주공아파트 607동 204호	6
									이영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31 역삼2차아파트 102동 1502호	
									정인순	미합중국 203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스코트드라이브 10723	
									이규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92-11	
									이규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00 센텀파크1차아파트 109동2404호	
									이규태	미합중국 20155 버지니아주 게인스빌 프레지던트랜닝웨이 14356	
									이민자	미합중국 203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스코트드라이브 10723	
									이순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98-11	
									안호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화주택 에이동 302호	
									이규석	서울 노원구 중계동 590 신안아파트 101동 106호	
									이현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69 극동아파트 102동 303호	
									최태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90-8	
7	서울	강남	세곡	-	118-1	도	184	184	서울특별시		7
8	서울	강남	세곡	-	97-3	도	3,398	350	서울특별시 강남구		8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9	서울	강남	세곡	-	122-16	도	895	895	서울특별시		9
10	서울	강남	세곡	-	115-2	도	592	592	국토교통부		10
11	서울	강남	세곡	-	115-7	전	383	383	서울특별시		11
12	서울	강남	세곡	-	111-2	도	17	17	이병무	서울 강남구 수서동 514	12
									이병욱	서울 강남구 수서동 514	
									이병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2-1	
									이병석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2-1	
									이병의	경남 양산군 응상읍 평산리 163 우선우아아파트 403동 103호	
									이병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7-4	
									이병욱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6-19	
									이병화	서울 강동구 상일동 298-2	
									이희순	서울 강동구 상일동 279-6	
									이완희	경기도 광주시 동부읍 덕주리 415-66	
									이미선	서울 강동구 상일동 279-6	
									이진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2-7 삼익빌라 203호	
									윤경미	인천 서구 가좌동 378-7	
13	서울	강남	세곡	-	110-1	도	66	66	서울특별시		13
14	서울	강남	세곡	당초	115-13	도	3,544	312	서울특별시		14
				변경	115-13	도	3,544	573	서울특별시		
15	서울	강남	세곡	당초	115-11	도	418	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변경	115-11	도	418	279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서울	강남	세곡	당초	115-9	임	5,598	2,056	서울특별시		16
				변경	115-9	임	5,598	3,129	서울특별시		
17	서울	강남	세곡	당초	115-3	전	334	118	서울특별시		17
				변경	115-3	전	334	234	서울특별시		
18	서울	강남	세곡	당초	122-19	임	2,908	1,209	서울특별시		18
				변경	122-19	임	2,908	1,894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9	서울	강남	세곡	-	113	도	4,562	1,752	서울특별시		19
20	서울	강남	세곡	신설	115-12	도	187	71	서울특별시 강남구		20
21	서울	강남	세곡	신설	산21	임	5,110	28	김종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 902호	21
									권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오영배	서울 반포동 242-1 한양아파트 1동 909호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박운환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1-14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봉천동아아파트 112동 1303호	
22	서울	강남	율현	-	산28-4	임	2,012	2,012	서울특별시		1
23	서울	강남	율현	-	277-2	도	13	13	서울특별시		2
24	서울	강남	율현	-	265-4	도	8,943	8,943	서울특별시		3
25	서울	강남	율현	-	265-5	도	7,329	7,32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4
									서울특별시		
26	서울	강남	율현	-	277-3	도	256	25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5
									서울특별시		
27	서울	강남	율현	-	266-5	잡	39	3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6
28	서울	강남	율현	-	265-1	도	154	154	서울특별시		7
29	서울	강남	율현	당초	산23-5	임	992	4	신승복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6-8	8
				변경	산23-5	임	992	6	신승복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6-8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 명	주 소	
30	서울	강남	울현	당초	산22	임	2,182	51	성기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5동 508호	9
				-----	-----	-----	-----	-----	전형팔	서울 강남구 삼성동 47-18 삼성동드림하우스 203호	
				변경	산22	임	2,182	63	성기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5동 508호	
				-----	-----	-----	-----	-----	전형팔	서울 강남구 삼성동 47-18 삼성동드림하우스 203호	
31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5-2	전	111	82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0
				변경	275-2	전	111	84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32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5-4	전	217	102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1
				변경	275-4	전	217	100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33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5-5	전	617	184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12
				변경	275-5	전	617	179	김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801호	
34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6-2	전	369	200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13
				변경	276-2	전	369	182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5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6-1	도	142	28	최규달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5-4 대일연립 다동 302호	14
				변경	276-1	도	142	31	최규달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5-4 대일연립 다동 302호	
36	서울	강남	울현	-	277-8	도	1,307	49	서울특별시		15
37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7-5	전	169	93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16
				변경	277-5	전	169	96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8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69-2	답	531	175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17
				변경	269-2	답	531	177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39	서울	강남	을현	-	258-2	도	258	258	서울특별시		18
40	서울	강남	을현	-	242-6	도	5,508	5,50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19
									서울특별시		
41	서울	강남	을현	-	242	도	7,803	7,803	서울특별시		20
42	서울	강남	을현	-	242-3	도	41	4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1
43	서울	강남	을현	-	240-7	도	22	2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44	서울	강남	을현	-	240-8	도	11	11	서울특별시		23
45	서울	강남	을현	-	240-6	도	2	2	서울특별시 강남구		24
46	서울	강남	을현	-	240-1	도	46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25
47	서울	강남	을현	-	244-10	도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26
48	서울	강남	을현	-	260-1	도	86	8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27
									서울특별시		
49	서울	강남	을현	-	260-2	도	218	21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28
									서울특별시		
50	서울	강남	을현	-	192-9	도	94	9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서울	강남	을현	-	259-8	도	4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0
52	서울	강남	을현	-	259-7	도	4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1
53	서울	강남	을현	-	259-6	잡	11	1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2
54	서울	강남	을현	-	257-1	도	89	89	기획재정부		3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55	서울	강남	을현	-	254-13	잡	5	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34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56	서울	강남	울현	-	254-8	도	3	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35
57	서울	강남	울현	당초	산28-1	임	5,516	424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36
									권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공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 번길 13, 613동 1104호	
				변경	산28-1	임	5,516	1,232	이성섭	서울 관악구 심림동 1575-2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권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13, 613동 1104호	
									이성섭	서울 관악구 심림동 1575-2	
58	서울	강남	울현	당초	산25	임	1,190	34	노유성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5	37
				변경	산25	임	1,190	81	노유성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5	
59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7-1	전	1,184	263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8
				변경	277-1	전	1,184	423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 명	주 소	
60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2-1	답	641	295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39
				변경	272-1	답	641	347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61	서울	강남	울현	-	270	답	135	135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0
62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83	전	1,871	207	이제호	서울 광진구 독섬로35길 32, 307동 505호	41
				변경	283	전	1,871	319	이제호	서울 광진구 독섬로35길 32, 307동 505호	
63	서울	강남	울현	-	269-4	답	99	99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2
64	서울	강남	울현	-	268	답	50	50	김분영	서울 성동구 구의동 227-43	43
65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2-4	답	1,839	342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4
				변경	272-4	답	1,839	382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66	서울	강남	울현	당초	270-2	답	721	298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45
				변경	270-2	답	721	330	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	서울 중구 명동2가 1	
67	서울	강남	울현	신설	산28-5	임	819	72	백동환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310호	46
									권 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전용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16	
									심재석	서울 도봉구 월계동 534-141	
									권쾌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16동 805호	
									김용석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3호	
									김용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3동 1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67	서울	강남	울현	신설	산28-5	임	819	72	김용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이진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312동 1101호	
68	서울	강남	울현	신설	산24	임	496	74	권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29	47
69	서울	강남	자곡	-	343-9	도	4	4	서울특별시		1
70	서울	강남	자곡	-	367-6	도	109	109	국토교통부		2
71	서울	강남	자곡	-	626	도	43,064	1,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72	서울	강남	자곡	-	355-1	도	4,828	4,828	서울특별시		4
73	서울	강남	자곡	-	343-8	도	47	47	서울특별시		5
74	서울	강남	자곡	-	343-7	도	17	17	서울특별시		6
75	서울	강남	자곡	-	343-6	도	42	42	서울특별시		7
76	서울	강남	자곡	-	344-7	도	12,340	12,340	서울특별시		8
77	서울	강남	자곡	-	56-109	도	25	25	서울특별시		9
78	서울	강남	자곡	-	56-106	구	8	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10
									서울특별시		
79	서울	강남	자곡	-	56-104	도	400	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80	서울	강남	자곡	-	363-2	도	1	1	서울특별시		12
81	서울	강남	자곡	-	353-3	도	7,028	407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13
82	서울	강남	자곡	-	367-4	도	33	33	서울특별시		14
83	서울	강남	자곡	-	367-3	도	261	261	서울특별시		15
84	서울	강남	자곡	-	366-4	도	44	44	서울특별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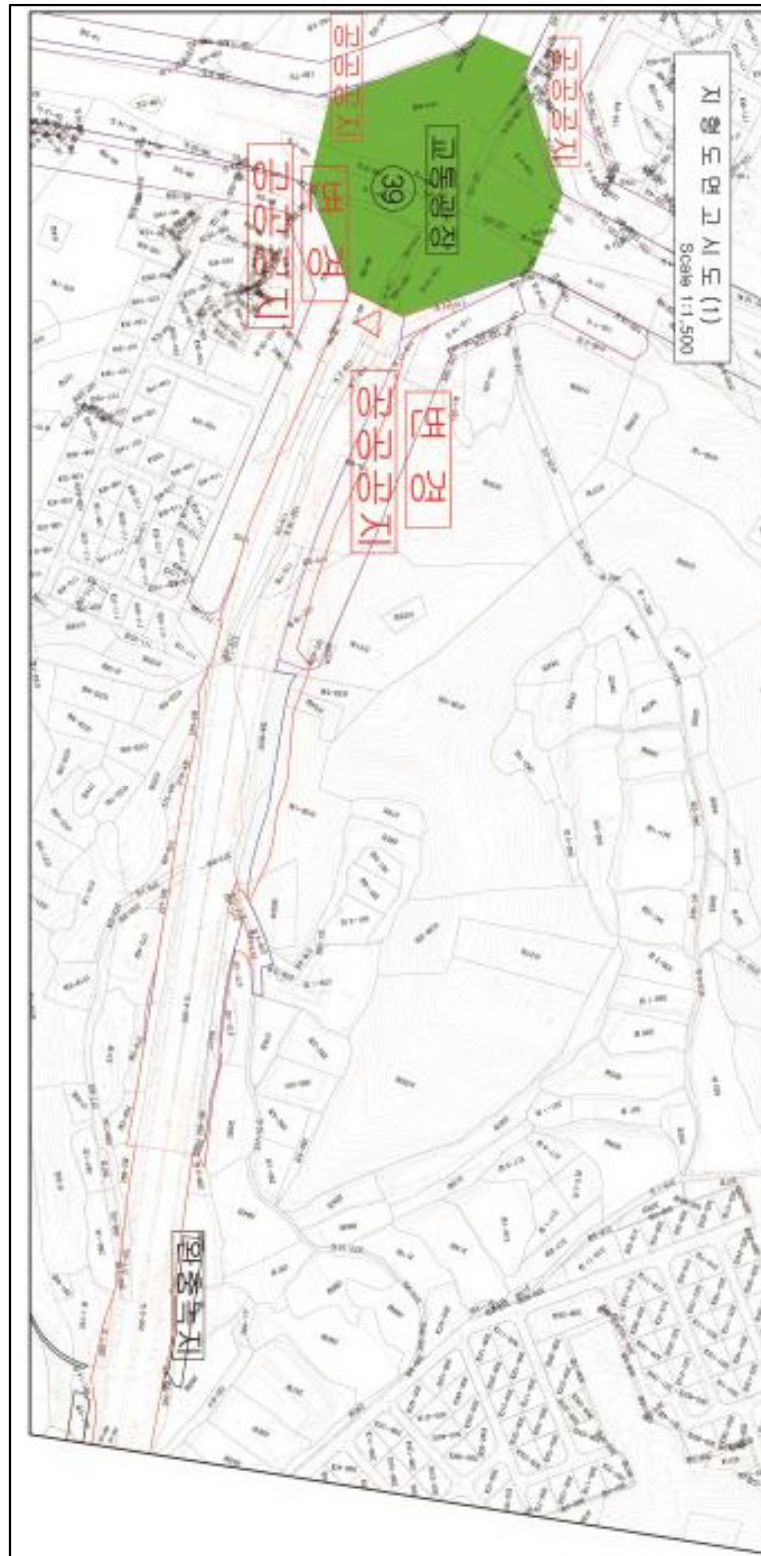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 명	주 소	
85	서울	강남	자곡	-	365-7	도	170	170	서울특별시		17
86	서울	강남	자곡	-	332	답	933	12	박우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 3동 1502호	18
87	서울	강남	자곡	-	331-1	답	1,440	4	김희선	서울 양천구 목동 901 목동 신시가지A. 101동 301호	19
88	서울	강남	자곡	-	320-3	도	86	86	서울특별시		20
89	서울	강남	자곡	-	323-4	도	221	221	국토교통부		21
90	서울	강남	자곡	-	320	도	1,625	1,625	서울특별시		22
91	서울	강남	자곡	-	304-4	도	1,988	1,988	서울특별시		23
92	서울	강남	자곡	-	320-2	도	48	48	서울특별시		24
93	서울	강남	자곡	-	196-1	도	2,818	2,532	서울특별시		25
94	서울	강남	자곡	-	313-1	도	2,933	2,933	서울특별시		26
95	서울	강남	자곡	-	203-1	도	4,160	4,160	서울특별시		27
96	서울	강남	자곡	-	205-9	도	209	209	서울특별시		28
97	서울	강남	자곡	-	205-15	도	253	253	서울특별시		29
98	서울	강남	자곡	-	211-1	도	3,480	3,480	서울특별시		30
99	서울	강남	자곡	-	211	도	699	70	서울특별시 강남구		31
100	서울	강남	자곡	-	205-13	도	108	108	서울특별시		32
101	서울	강남	자곡	-	205-12	도	277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33
102	서울	강남	자곡	-	210-3	도	18	18	서울특별시		34
103	서울	강남	자곡	-	207-6	도	6,408	6,408	서울특별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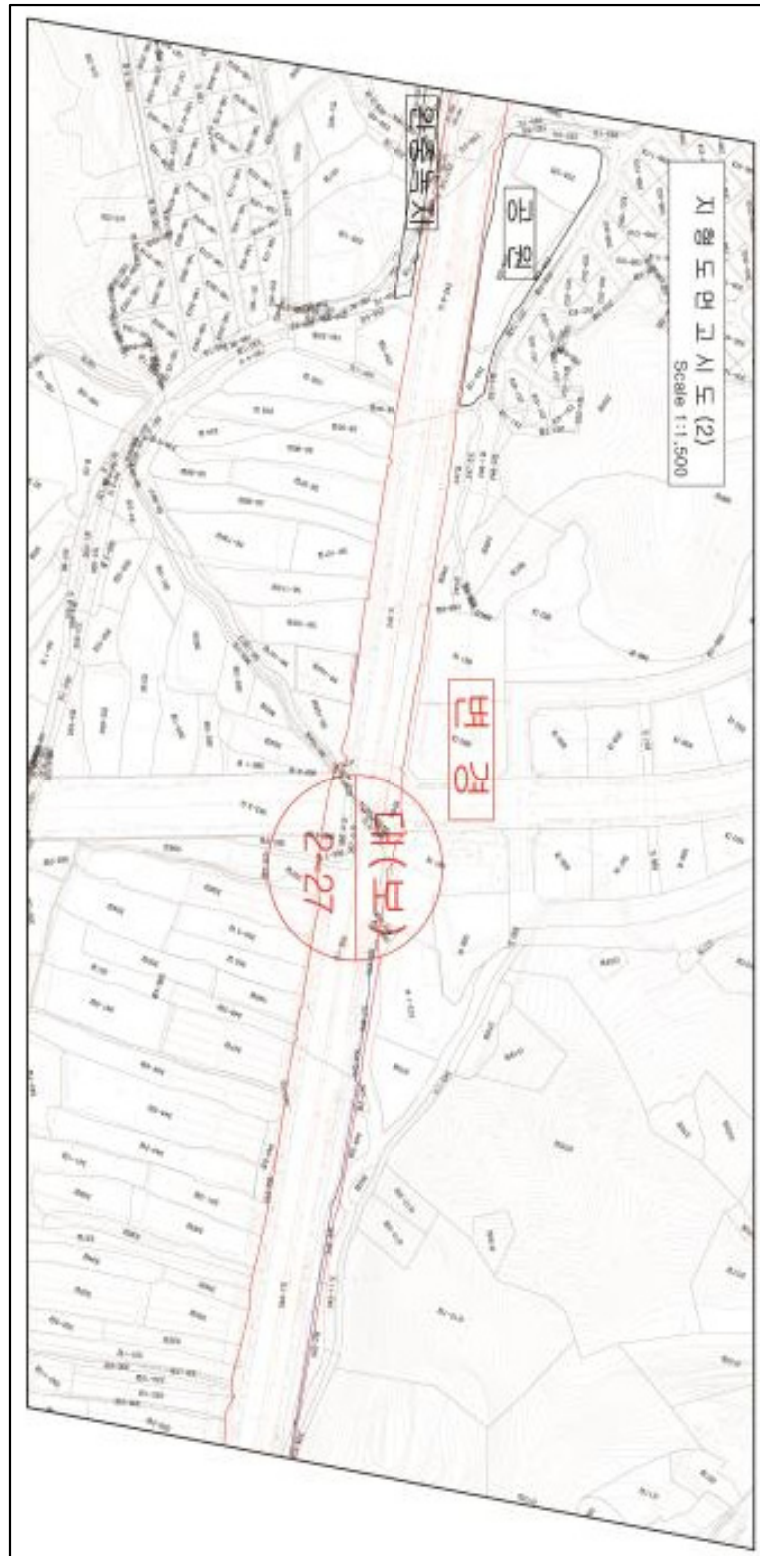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 명	주 소	
104	서울	강남	자곡	-	206-1	도	169	133	국토교통부		36
105	서울	강남	자곡	-	207-3	답	7	7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37
106	서울	강남	자곡	-	207-2	도	27	27	국토교통부		38
107	서울	강남	자곡	-	208-5	답	32	32	국토교통부		39
108	서울	강남	자곡	-	205-3	도	233	233	서울특별시		40
109	서울	강남	자곡	-	207-12	임	634	629	서울특별시		41
110	서울	강남	자곡	-	207-1	도	47	47	국토교통부		42
111	서울	강남	자곡	-	산1-10	임	364	102	국토교통부		43
112	서울	강남	자곡	-	199-1	답	32	32	서울특별시		44
113	서울	강남	자곡	-	200-3	답	86	86	국토교통부		45
114	서울	강남	자곡	-	201-2	도	484	484	서울특별시		46
115	서울	강남	자곡	-	201-4	답	161	161	국토교통부		47
116	서울	강남	자곡	-	201-3	답	27	27	국토교통부		48
117	서울	강남	자곡	-	202-1	답	24	24	서울특별시		49
118	서울	강남	자곡	-	202-2	답	831	617	국토교통부		50
119	서울	강남	자곡	-	304-5	구	28	28	서울특별시		51
120	서울	강남	자곡	-	205-11	도	102	102	서울특별시		52
121	서울	강남	자곡	-	194-10	도	1,101	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53
122	서울	강남	자곡	-	205-6	구	967	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54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명	주소	
123	서울	강남	자곡	-	203	답	397	341	서울특별시		55
124	서울	강남	자곡	-	205-14	도	905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56
125	서울	강남	자곡	-	204-8	답	9	9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57
126	서울	강남	자곡	-	204-10	주	694	694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58
127	서울	강남	자곡	-	204-11	답	135	135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59
128	서울	강남	자곡	-	205-2	답	616	384	국토교통부		60
129	서울	강남	자곡	-	206-2	답	198	164	국토교통부		61
130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7-2	답	130	21	강민철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35	62
				변경	347-2	답	130	43	강민철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35	
131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3-11	도	2,80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63
				변경	343-11	도	2,803	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132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4-5	답	458	111	채홍수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4	64
				변경	344-5	답	458	183	채홍수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4	
133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2-3	전	362	83	정성욱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1동 505호	65
				변경	342-3	전	362	213	정성욱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1동 505호	
134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42-2	답	638	139	박민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407호	66
				변경	342-2	답	638	271	박민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 7동 407호	
135	서울	강남	자곡	당초	304-6	구	356	75	서울특별시		67
				변경	304-6	구	356	104	서울특별시		
136	서울	강남	자곡	당초	산17-1	임	13,289	216	이겸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41동 1303호	68
				변경	산17-1	임	13,289	353	이겸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41동 1303호	
137	서울	강남	수서	-	209-2	도	51	51	국토교통부		1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 명	주 소	
138	서울	강남	수서	-	206-2	도	7,817	7,817	서울특별시		2
139	서울	강남	수서	-	210-1	도	47	47	국토교통부		3
140	서울	강남	수서	-	산1-5	임	1,253	291	국토교통부		4
141	서울	강남	수서	-	210-6	전	35	35	국토교통부		5
142	서울	강남	수서	-	212-5	도	148	148	서울특별시		6
143	서울	강남	수서	-	203-2	도	104	61	국토교통부		7
144	서울	강남	수서	-	203-6	답	786	29	국토교통부		8
145	서울	강남	수서	-	205-4	도	57	57	국토교통부		9
146	서울	강남	수서	-	205-1	답	913	202	국토교통부		10
147	서울	강남	수서	-	205-2	도	49	49	국토교통부		11
148	서울	강남	수서	-	206-1	답	555	169	국토교통부		12
149	서울	강남	수서	-	203-7	도	1,207	586	서울특별시 강남구		13
150	서울	강남	수서	-	207-2	도	13	13	국토교통부		14
151	서울	강남	수서	-	207-14	잡	102	64	국토교통부		15
152	서울	강남	수서	-	207-13	잡	207	5	국토교통부		16
153	서울	강남	수서	-	207-10	잡	15	15	국토교통부		17
154	서울	강남	수서	-	207-9	잡	175	61	국토교통부		18
155	서울	강남	수서	-	208-7	잡	44	19	국토교통부		19
156	서울	강남	수서	-	208-9	잡	23	23	국토교통부		20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면 번호)
	시	구	동						성 명	주 소	
157	서울	강남	수서	－	208－8	잡	28	23	국토교통부		21
158	서울	강남	수서	－	208－4	잡	20	10	국토교통부		22
159	서울	강남	수서	－	214－11	잡	117	4	국토교통부		23
160	서울	강남	수서	－	213－6	철	233	105	국토교통부		24
161	서울	강남	수서	－	211－3	전	220	148	국토교통부		25
162	서울	강남	수서	－	211－2	전	3	3	국토교통부		26
163	서울	강남	수서	－	산1－4	임	150	150	국토교통부		27
164	서울	강남	수서	－	443－9	임	35	35	국토교통부		28
165	서울	강남	수서	－	443－8	전	11	11	국토교통부		29
166	서울	강남	수서	－	728	도	18,547	18,547	서울특별시		30
167	서울	강남	수서	－	213－3	전	1,095	152	국토교통부		31
168	서울	강남	수서	－	440－9	도	11	11	서울특별시		32
169	서울	강남	수서	－	284－5	도	1,219	190	서울특별시		33
170	서울	강남	수서	－	724－4	공	1,316	274	서울특별시		34
171	서울	강남	수서	－	719	도	17,277	126	서울특별시		35
172	서울	강남	수서	당초	735	차	18,002	337	서울특별시	-----	36
				변경	735	차	18,002	489	서울특별시		
173	서울	강남	수서	당초	729－1	공	6,874	84	서울특별시	-----	37
				변경	729－1	공	6,874	146	서울특별시		
합 계				당 초				125,028			
				변 경				129,8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7호

도시관리계획(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4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고, 유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	-	증) 13,161	13,16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	13,16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시설 폐지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161	-	13,161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3,161	-	13,161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학교	중학교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대	13,161	감) 13,161	-	1975.12.8 (서고제200호)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학교	학교 폐지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	증) 1,363	1,363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신설	①-1	①	13,161	1	논현동 40	11,798	공동주택
신설	①-2			2	논현동 40	1,363	공공청사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허용용도

분류	허용용도	비고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Ⅰ-1)
B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공공시설	획지2 (Ⅰ-2)

(2) 불허용도

분류	불허용도	비고
C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부적절한 다음의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3호의 교정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획지1 (Ⅰ-1)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1 (Ⅰ-1)	60% 이하	-
획지2 (Ⅰ-2)	60% 이하	-

(2) 용적률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1 (Ⅰ-1)	기준용적률 : 170% 이하		-
	허용용적률 : 190%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포함된 용적률로, 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 효력 자동 상실	
	상한용적률 : 21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가중치)	
획지2 (Ⅰ-2)	200% 이하		-

주) 1.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2.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다. 건축물의 높이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1 (Ⅰ-1)	평균층수 8층 이하 (최고높이 10층 이하, 가로변 7층 이하)	-
획지2 (Ⅰ-2)	20m 이하	-

라.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1) 건축물의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1 (Ⅰ-1)	건축한계선 인접 도로변 3m	-
	배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획지2 (Ⅰ-2)	건축한계선 인접 도로변 3m	-
	배치 건축물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1 (Ⅰ-1)	형태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 내 서로 다른 외벽재료 사용 시 재료들 간 조화 고려 권장	-
	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계획	-
획지2 (Ⅰ-2)	형태 진출입구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계획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부분(폭 3m)	- 보행공간의 추가 확보로 가로의 안전성 및 편리성 증진 -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쌈지형공지	도로 가각부 (2개소)	- 학동공원 인접 주민 휴게·휴식공간 제공 - 최소 폭원 5m(건축한계선 지정부분 제외) 이상 - 필로티형으로 조성시 높이 6m 이상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도로 가각부 (4개소)	도로 가각부 20m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으로 교통혼잡 예방	-

나.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구분	합계	학교시설 폐지		층수 완화		비고
		부담률	면적환산	부담률	면적환산	
공공시설 부담률	3,880.15㎡ 이상 (구역 면적의 29.48% 이상)	시설폐지 면적의 25%	13,161㎡ × 25% = 3,290.25㎡	층수 완화 부지면적의 5%	11,798㎡ × 5% = 589.90㎡	-

(2)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시설 부담계획	내 용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및 공공시설 건축물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부 담 량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9.48% 이상 관 리 청 : 강남구 (관련부서 협의 통해 관리청 및 용도 결정) 세부기준 :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공공시설 계획은 건축허가 전까지 시·구 공공기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시설 세부 계획(관리청 지정, 건축계획, 시설 운영·관리계획 등) 수립	-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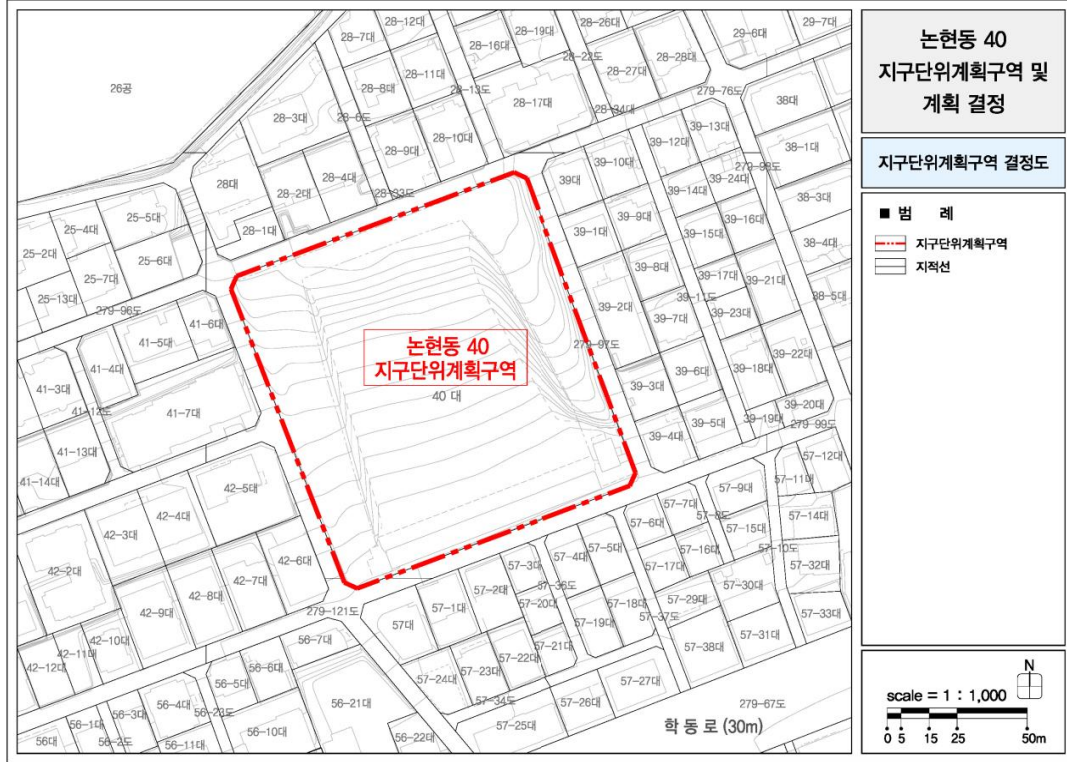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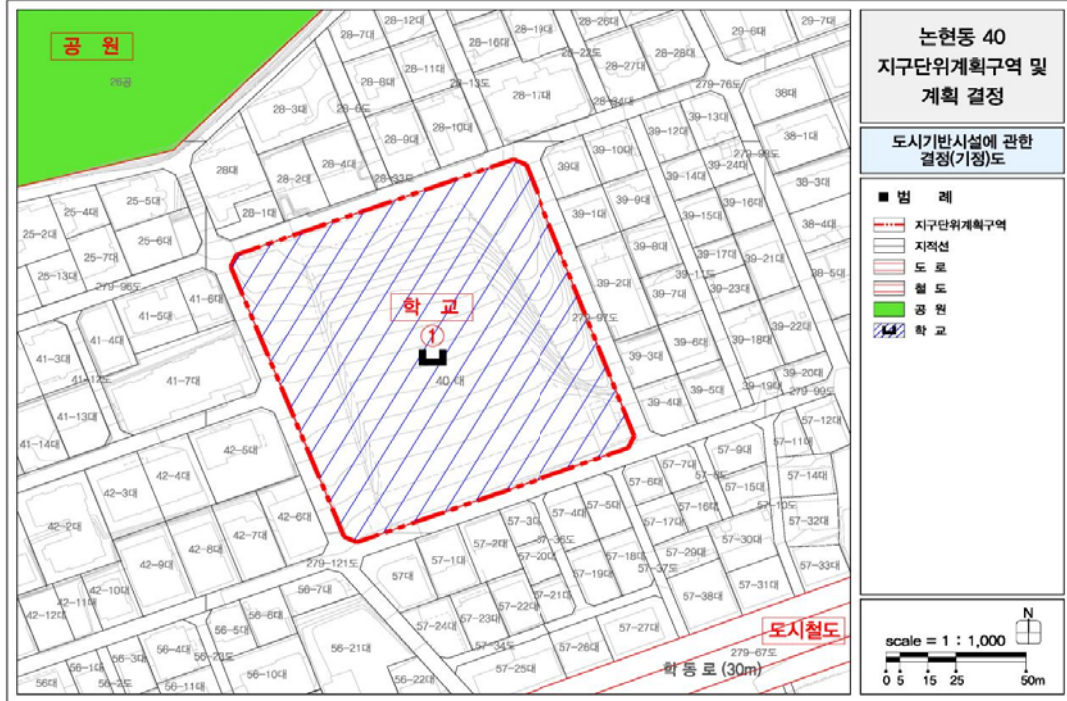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2),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0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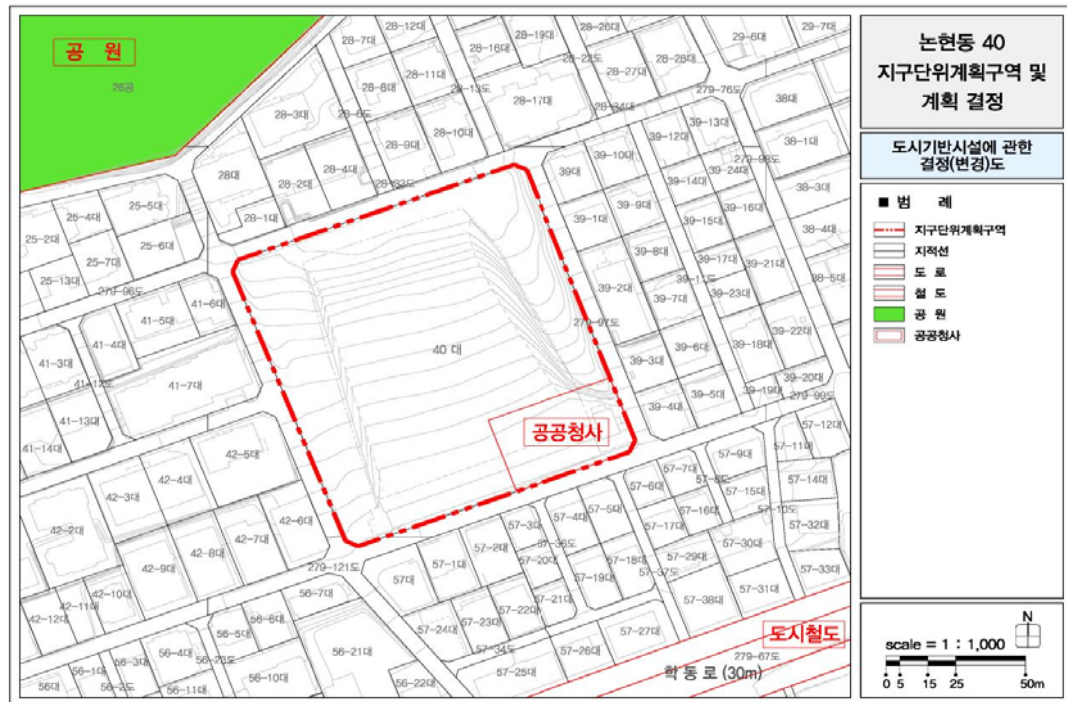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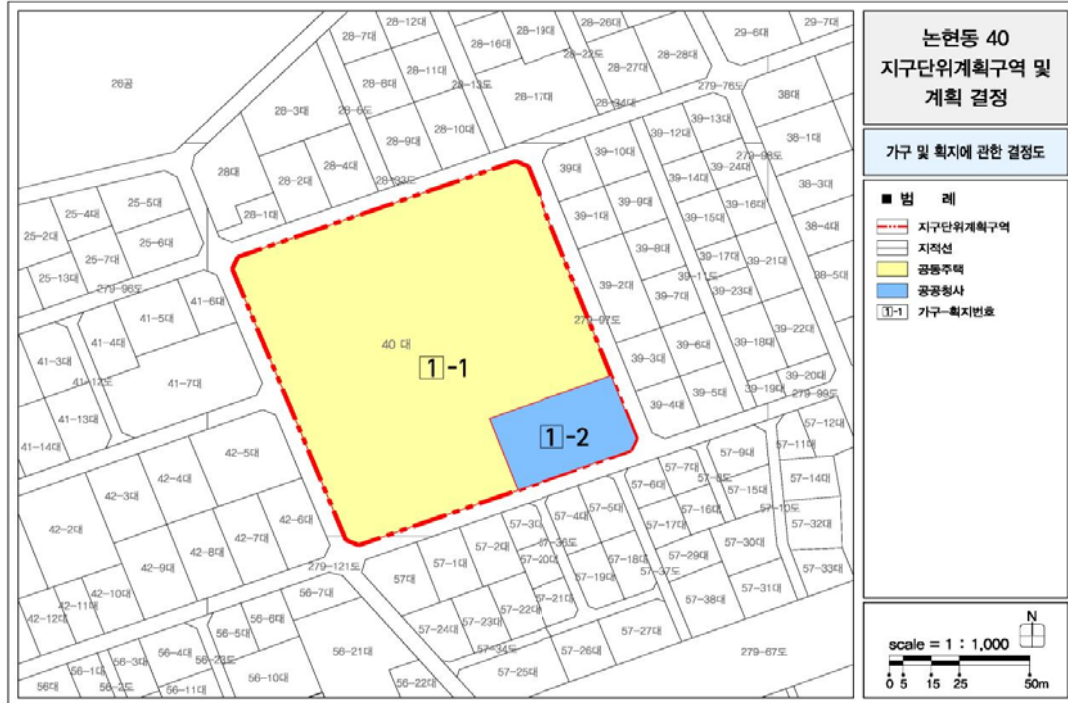
<도시기본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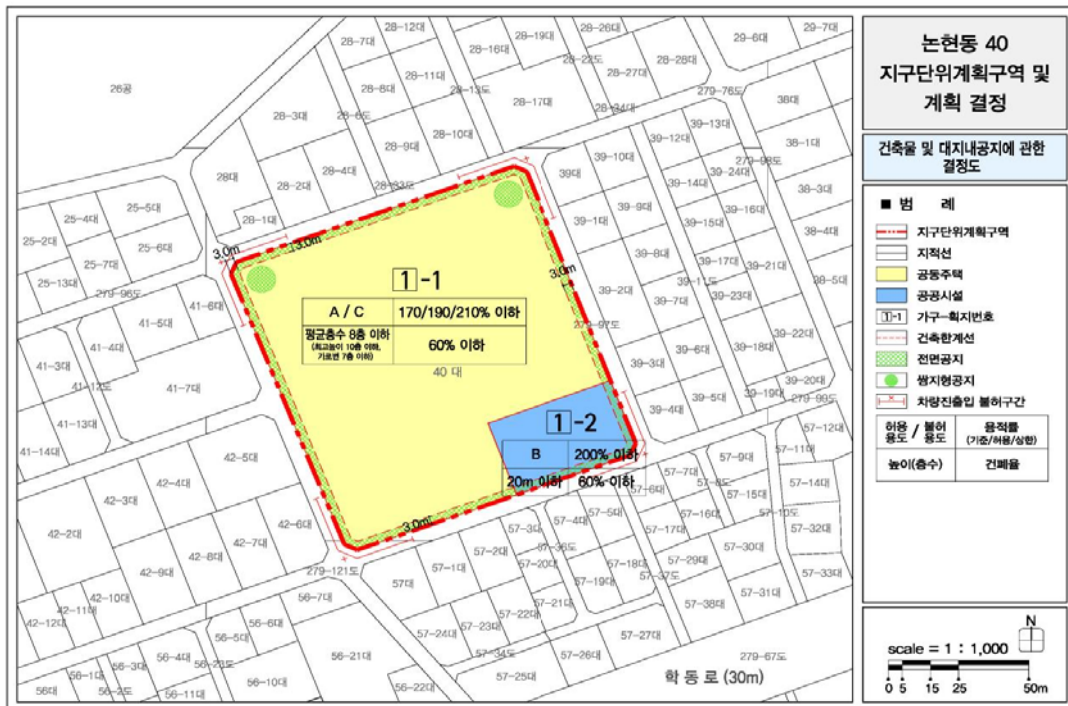
<도시기본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8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염리2)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7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9호(2012.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7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2013.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4호(2013.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0호(2014.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5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3호(2014.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5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2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4호(2014.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5.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호(2016.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3호(2017.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4호(2017.6.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786,661.9	-	786,661.9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768,661.9	－	768,661.9	
촉진 구역	소 계			472,016.0	－	472,016.0	
	주택 재개발사업	아현3구역	아현동 635번지 일원	207,420.8	－	207,420.8	
		공덕5구역	공덕동 175번지 일원	42,713.0	－	42,713.0	
		염리2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8.3	－	51,748.3	
		염리3구역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985.6	－	87,985.6	
	도시환경정비사업	마포로6구역	공덕동 385번지 일원	16,594.8	－	16,594.8	
	주택 재건축사업	아현2구역	아현동 662번지 일원	65,553.5	－	65,553.5	
존치 구역	존치구역 등		대흥동 28번지 일원	296,645.9	－	296,645.9	

3.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염리2구역 외 변경없음)

4.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8.3	-	51,748.3	

나.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주거 지역	소계	51,748.3	-	51,748.3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51,748.3	-	51,748.3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1,748.3	-	51,748.3	100.0
택 지 (획 지)	소 계	41,102.2	-	41,102.2	79.4
	획 지 1	37,197.2	-	37,197.2	71.9
	획 지 2	1,491.0	-	1,491.0	2.8
	획 지 3	1,115.0	-	1,115.0	2.2
	획 지 4	330.0	-	330.0	0.6
	획 지 5	290.0	-	290.0	0.6
	획 지 6	300.0	-	300.0	0.6
	획 지 7	379.0	-	379.0	0.7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0,646.1	-	10,646.1	20.6
	도 로	7,821.3	-	7,821.3	15.2
	공 원	1,931.7	-	1,931.7	3.7
	소공원	893.1	-	893.1	1.7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439	15	집산 도로	620 (183)	염리동 81-13	염리동 14-181	일반 도로	-	2008.01.10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0	염리동 36-216	염리동 516	일반 도로	-	2008.01.10	
기정	중로	3	2	4~1 5	국지 도로	209	염리동 516	염리동 27-88	일반 도로	-	2008.01.1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60	염리동 27-88	염리동 27-161	일반 도로	-	2008.01.10	

※ ()는 축진구역내 수치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 설	주차장	염리동 58-1 일원	-	3,046.7	3,046.7	-	어린이공원 (1,931.7㎡) 중복결정(지하)과 획지3(1,115㎡) 입체적 결정 (지하3층)

■ 주차장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주차장	염리동 61-4 일원	층수	-	지하3층	지하3층	-	획지3 지하 입체적 결 정
			면적(㎡)	-	1,115	1,115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중복결정 및 입체적 결정	◦ 어린이공원(1,931.7㎡)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및 획지3(1,115㎡) 지하3층부 입체적 결정

다)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공 원	어린이공원	염리동 58-1 일원	1,931.7	-	1,931.7	2008.01.10	공원경계 변경
기정	공 원	소공원	염리동 27-164 일원	893.1	-	893.1	2008.01.10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 공원 경계부 변경 - 면적변경 없음	◦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원시설 경계 변경 및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관리사무소	염리동 45번지 일원	149.431	-	149.431	
기정	주민운동시설	"	930.445	-	930.445	
기정	주민공동시설	"	1,851.502	-	1,851.502	
기정	경 로 당	"	310.454	-	310.454	
기정	어린이놀이터	"	932.790	-	932.790	
기정	생활편익시설	"	1,858.247	-	1,858.247	
기정	문고시설	"	360.000	-	360.000	
기정	보육시설	"	362.812	-	362.812	
기정	휴게시설	"	2개소	-	2개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염리2재정비 촉진구역	51,748.3	-	51,748.3	염리동 45번지 일원	275	2	-	273 (신축12동)	-	-

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염리2 구역	51,748.3	획지1	37,197.2	염리동 45-2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8.33 이하 (적용 244.12)	25층이하 (평균21층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95m이하	148,675.82 5㎡
			획지2	1,491.0	염리동 45일원	일성학교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3	1,115.0	염리동 61-4일원	독서실, 어린이집				
			획지4	330.0	염리동 72-1일원	종교용지				
			획지5	290.0	염리동 36-38일원	유치원				
			획지6	300.0	염리동 34일원	종교용지				
			획지7	379.0	염리동 36-21일원	유치원				
변경	염리2 구역	51,748.3	획지1	37,197.2	염리동 45-2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8.33 이하 (적용 244.12)	25층이하 (평균21층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95m이하	148,675.82 5㎡
			획지2	1,491.0	염리동 45일원	일성학교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3	1,115.0	염리동 61-4일원	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획지4	330.0	염리동 72-1일원	종교용지				
			획지5	290.0	염리동 36-38일원	유치원				
			획지6	300.0	염리동 34일원	종교용지				
			획지7	379.0	염리동 36-21일원	유치원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927세대 (임대주택 : 160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80세대(8.63%) [임대 : 80세대] - 전용면적 40~50㎡ : 64세대(6.90%) [임대 : 64세대] - 전용면적 50~60㎡ : 322세대(34.73%) [임대 : 16세대] - 전용면적 60~85㎡ : 449세대(48.43%) - 전용면적 85㎡이상 : 12세대(1.31%) ※ 세부개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순환생활가로변 - 6m • 이면 도로부 - 3m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	염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927세대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세대수	40㎡ 이하	80	—	80	
	40 ~ 50㎡ 이하	64	—	64	
	50 ~ 60㎡ 이하	16	—	16	
	계	160	—	160	
	비율	17.25	—	17.25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연면적		9,914.025㎡	—	9,914.025㎡	

5.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된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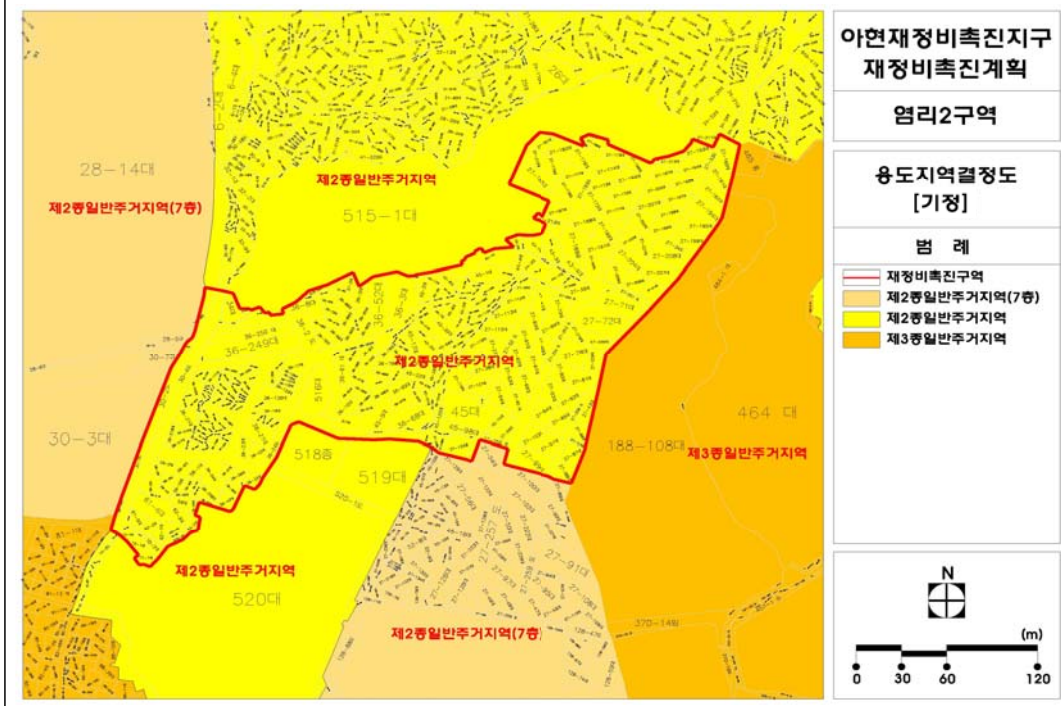
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2133-7228) 및 마포구 주택과 (☎3153-933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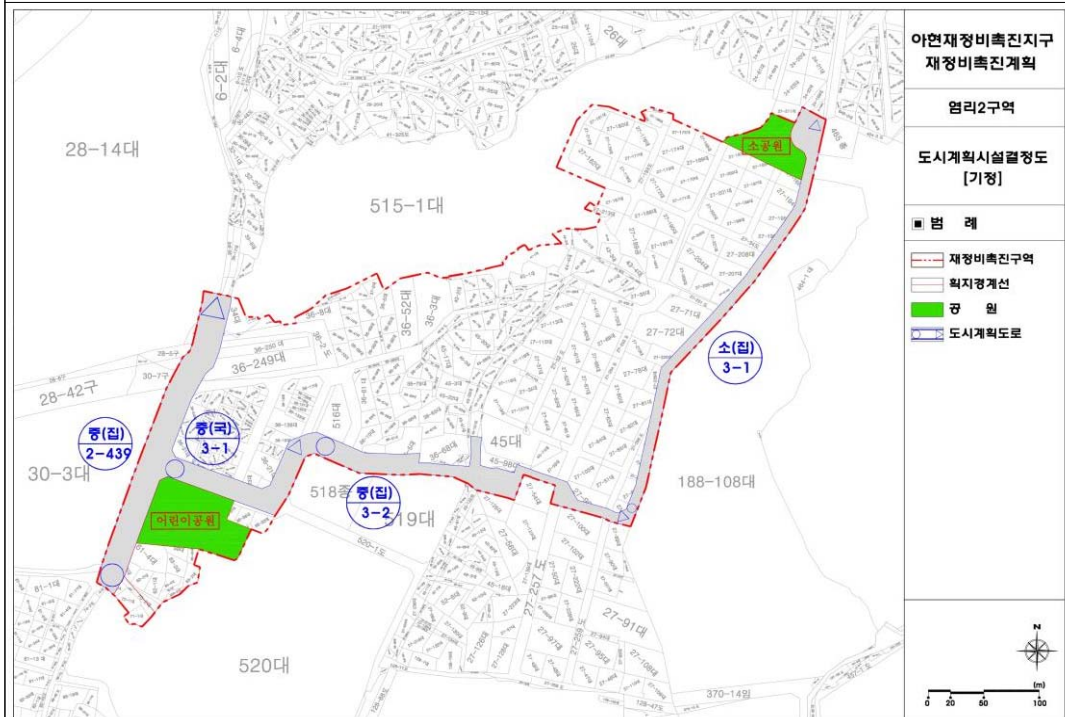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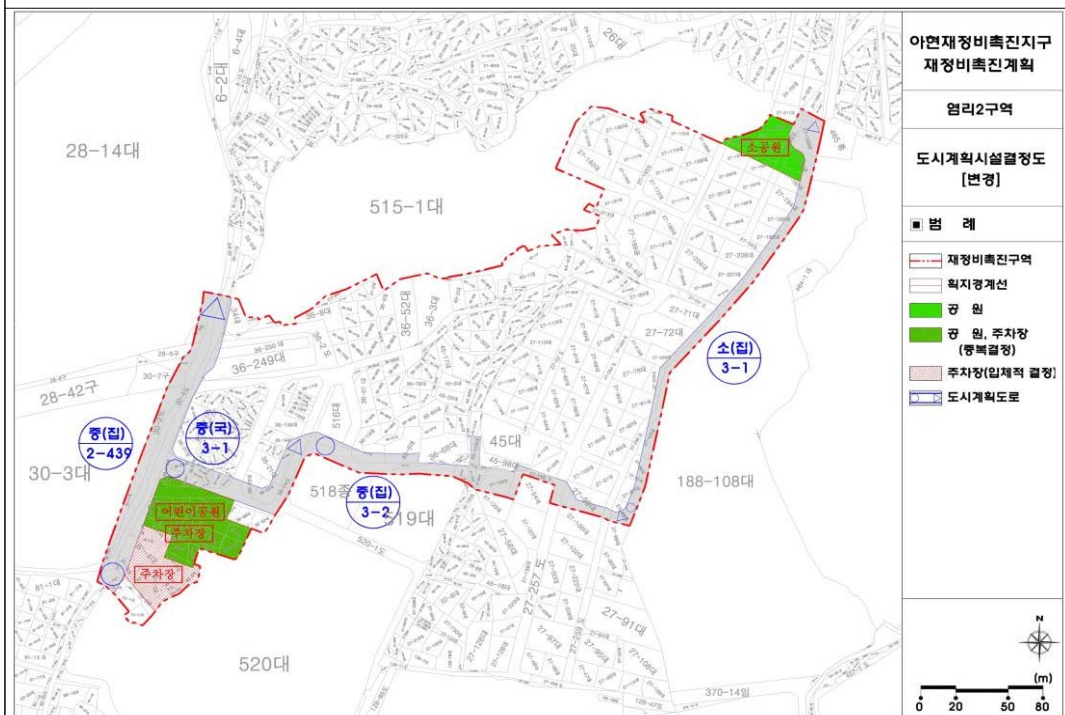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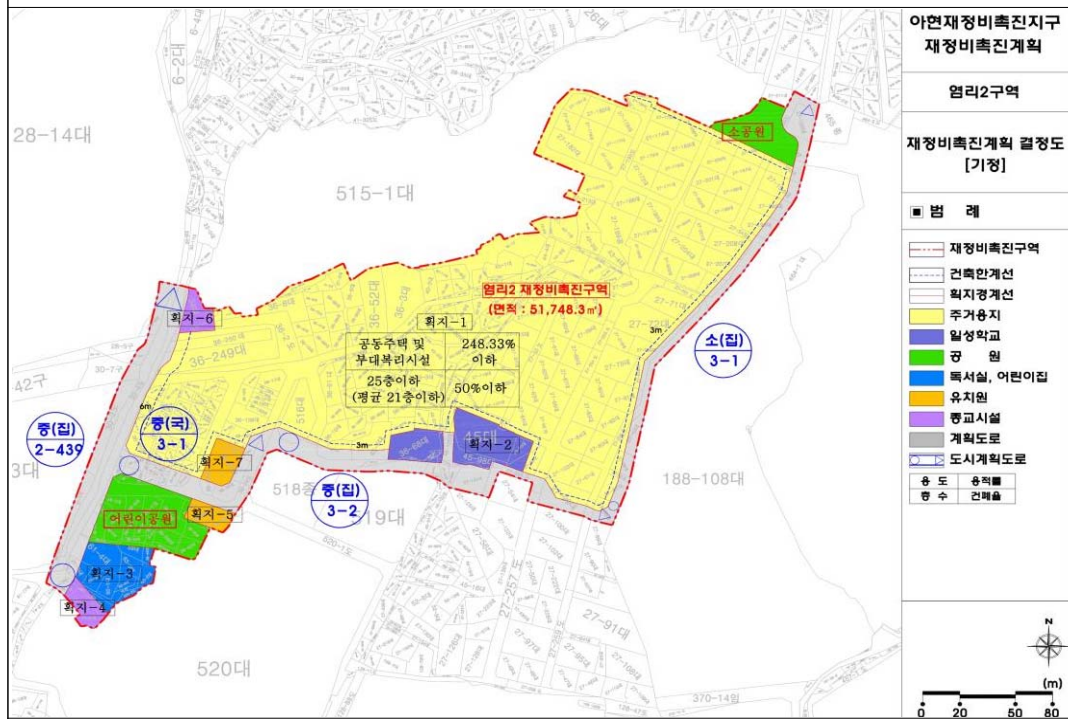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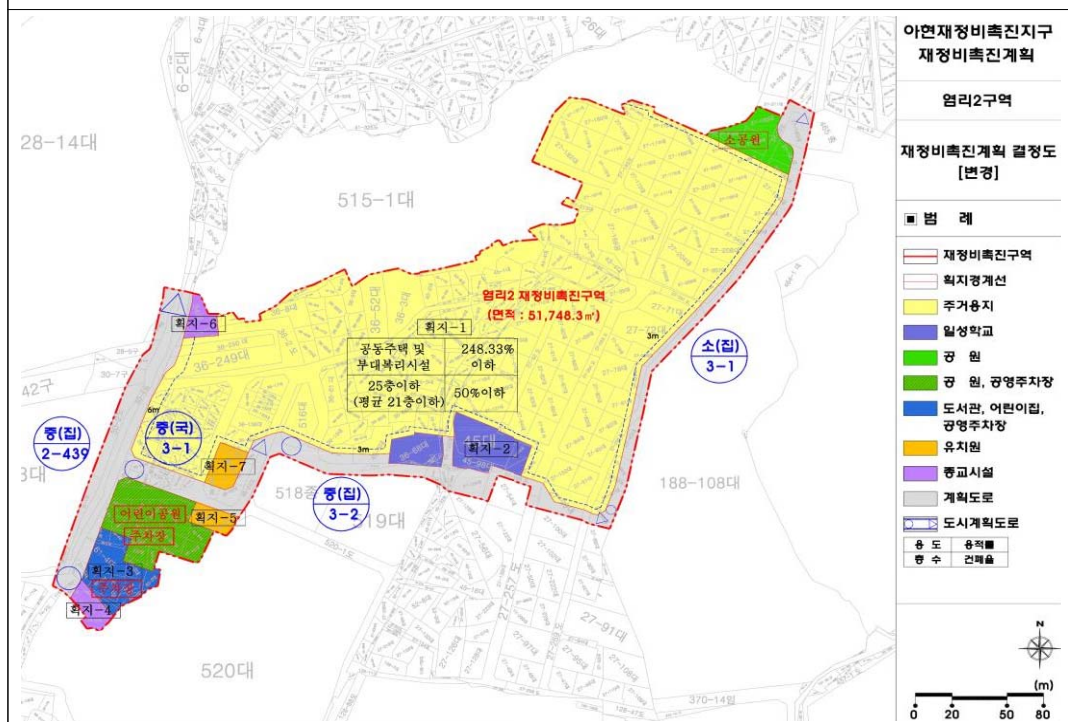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8.2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8.23.)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에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72	50	주간선 도로	1,12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영동대로 가감속차로 3m확보
변경	광로	1	72	50~ 53	주간선 도로	1,120 (5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4	15~ 22.5	국지 도로	6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개원길 가감속차로 3m확보
변경	중로	1	404	15~ 25.5	국지 도로	620 (1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402	8~ 12	국지 도로	304	대로3-108	근린공원 1	일반 도로	-	서고시 2014-208호 (14.06.05)	일원로8길 연장변경
변경	소로	2	402	8~ 12	국지 도로	366 (62)	대로3-108	학교4	일반 도로	-	-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의 해당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72	광로 1-72	• 교차부 가감속차로 확보 (폭 3m)	• 교차부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하여 가감속차로 3m 확보
중로 1-404	중로 1-404	• 주출입구 주변 도로확폭 (폭 22.5m → 25.5m)	• 단지주출입구부 가감속차로 확보(폭 3m)
소로 2-402	소로 2-402	• 연장변경(304m→366m)	• 단지부출입구 진입도로 계획에 따른 소로 2-402(일원로 8길) 연장변경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교통시설은 변경없음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일원동 693	2,339.4	-	2,339.4	-	양재대로변 (폭 10m)
신설	㉒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일원동 688	-	증) 3,131.8	3,131.8	-	영동대로변 (폭 12m)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⑱	녹지	• 신설 : 3,131.8㎡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상징·보행 등 다목적기능의 연결 녹지 신설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공간시설은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1~10, 12~32 : 생략(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1(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11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55,153.2	증) 2,339.4	57,492.6	공무원9단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특별계획구역 11	• 면적 : 55,153.2㎡ → 57,492.6㎡ (증 2,339.4㎡)	• 양재대로변 완충녹지(폭10m)를 구역에 포함	공무원 9단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 특별계획구역 1~10, 12~32 : 생략(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1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688	•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55,153.2㎡	• 57,492.6㎡	
획지(계획대지) 면적			• 49,179.2㎡	• 51,021.0㎡	
공공시설 면적			• 5,974.0㎡	• 6,471.6㎡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10.8% 내외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7.5% 내외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5,974㎡ - 연결녹지 폭12m(영동대로변) (면적 : 2,946㎡) 계획 - 문화시설(면적 : 424㎡) 1개소 계획 - 보행자우선도로 폭8m(일원초교변) 계획 및 개원길 · 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설치(면적 : 2,604㎡) ※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면적 : 3,131.8㎡) 계획 - 개원길 · 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 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000.4㎡) ※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계획	용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 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주1)	기준 용적률	• 190% 이하	• 190% 이하	
		허용 용적률	• 200% 이하	• 240% 이하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10%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40%
		상한 용적률	• 230% 이하	• 260% 이하	
	높 이		• 평균 18층 이하(기부채납10% 이상)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 25m	• 최고층수 25층 이하 •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 25m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한계선	• 개원길변 : 6m • 양재대로변 : 10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개원길변 : 6m • 양재대로변 : 10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기타에 관한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 보행자 우선도로 1개소 지정 • 단지 주출입구, 중앙광장, 중동중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 일원초등학교변 공공보행통로(8m)지정 • 단지 주출입구, 중앙광장, 연결녹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영동대로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 개원길, 양재대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 이상)	• 영동대로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 개원길, 양재대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 이상)	
	근린광장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주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4항에 의거 용적률 적용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0% = 40%]

※ 허용용적률은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20년 이상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합산하여 적용

5. 인센티브 항목(변경)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특별계획구역(기정)

항 목	완 화 내 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합계	20%	
우수디자인 건축물 도입시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10%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5%	

※ 단, 인센티브 범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

A. 「서울시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

구분		판 단 기 준				
우 수 디자인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형식 다양화	1. 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복층화, 디자인된 혼합형 등)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다양화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계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지속가능형 건축 구조	라멘 구조 무량판 구조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분야	세부평가기준		비고	
		건축 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 보가 일체화된 라멘 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 구조 •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측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공용 설비	• 각 세대별로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 에너지 최우수 등 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85점 이상)				

■ 특별계획구역(변경)

구 분	인센티브 (용적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 10%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합계	최대 10%이내		

※상기 특별계획구역11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변경없음

■ 기타지역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⑪	특별계획구역11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55,153.2	증) 2,339.4	57,492.6	구역계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특별계획구역11	• 면적 : 55,153.2㎡ → 57,492.6㎡ (증 2,339.4㎡)	• 양재대로변 완충녹지(폭10m)를 구역에 포함	공무원 9단지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57,492.6	-	57,492.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4.4	-	404.4	0.7	
	제2종일반주거지역	57,088.2	-	57,088.2	99.3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양재I.C ~ 수서I.C (개포지하차도 ~ 삼성의료원앞사거리)	150,000 (2,339.4)	6,250 (242)	양측12m	서고시373호 (90.11.7)	양재 대로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의 해당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72	50	주간선 도로	1,12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영동대로 가감속차로 3m확보
변경	광로	1	72	50~53	주간선 도로	1,120 (50)	광장86	광로 1-28	일반 도로	-	서고시344호 (83.06.24)	
기정	중로	1	404	15~22.5	국지 도로	6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개원길 가감속차로 3m확보
변경	중로	1	404	15~25.5	국지 도로	620 (120)	광로1-72	대로3-10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402	8~12	국지 도로	304	대로3-108	근린공원 1	일반 도로	-	서고시 2014-208호 (14.06.05)	일원로8길 연장변경
변경	소로	2	402	8~12	국지 도로	366 (62)	대로3-108	학교4	일반 도로	-	-	

※ ()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의 해당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72	광로 1-72	• 교차부 가감속차로 확보 (폭 3m)	• 교차부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하여 가감속차로 3m 확보
중로 1-404	중로 1-404	• 주출입구 주변 도로확폭 (폭 22.5m → 25.5m)	• 단지주출입구부 가감속차로 확보(폭 3m)
소로 2-402	소로 2-402	• 연장변경(304m→366m)	• 단지부출입구 진입도로 계획에 따른 소로 2-402(일원로 8길) 연장변경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교통시설은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일원동 693	2,339.4	-	2,339.4	-	양재대로변 (폭 10m)
신설	⑬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일원동 688	-	증) 3,131.8	3,131.8	-	영동대로변 (폭 12m)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녹지	• 신설 : 3,131.8㎡	• 간선도로변 완충기능과 경관·상징·보행 등 다목적기능의 연결녹지 신설

※ 상기 변경 시설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공간시설은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	51,021.0	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	51,021.0	-	51,021.0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동	
	허용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좌동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 190% 이하	• 좌동	
	허용용적률 • 240% 이하	• 좌동	•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10% •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40%
	상한용적률 • 260% 이하	• 좌동	
높이	• 최고층수 25층 이하 • 저층구간(7층이하) : 개원길변 폭25m	• 좌동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 허용용적률은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20년 이상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합산하여 적용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0% = 40%]

※ 특별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개원길변 : 6m • 양재대로변 : 10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좌동	• 결정도에 따름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경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좌동	
보행동선	• 일원초등학교변 공공보행통로(8m) 조성 • 단지 주출입구, 중앙광장, 연결녹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조성	• 좌동	• 결정도에 따름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좌동	• 결정도에 따름
자전거도로	• 영동대로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 개원길, 양재대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폭1.5m 이상)	• 영동대로, 개원길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 폭3m • 양재대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 폭3m	
근린광장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 좌동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3. 공공·기반시설 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 (면적 : 3,131.8㎡)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000.4㎡) ※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132.2㎡ - 연결녹지 1개소(영동대로변 폭 12m) (면적 : 3,131.8㎡) 계획 - 개원길·영동대로변 가감속차로, 일원초교 앞 8m도로 설치(면적 : 1,000.4㎡) ※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폭10m)(면적 : 2,339.4㎡)를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 '계획지침' 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금회 계획지침 변경 내용임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특별계획구역(기정)

항 목		완 화 내 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합계		20%	
A. 서울시 기 준	우수디자인 건축물 도입시	5%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10%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5%	

※ 단, 인센티브 범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

A. 「서울시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우 수 디자인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복층화, 디자인된 혼합형 등)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다양화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계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라멘 구조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분야	세부평가기준		비고	
	무량판 구조	건축 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 보가 일체화된 라멘 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 구조 ●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측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공용 설비	● 각 세대별로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 최우수 등 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85점 이상)				

■ 특별계획구역11(변경)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 효율 인증1등급		에너지 효율 인증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 10%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	12%	9%	6%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합계	최대 10%이내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11을 제외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변경없음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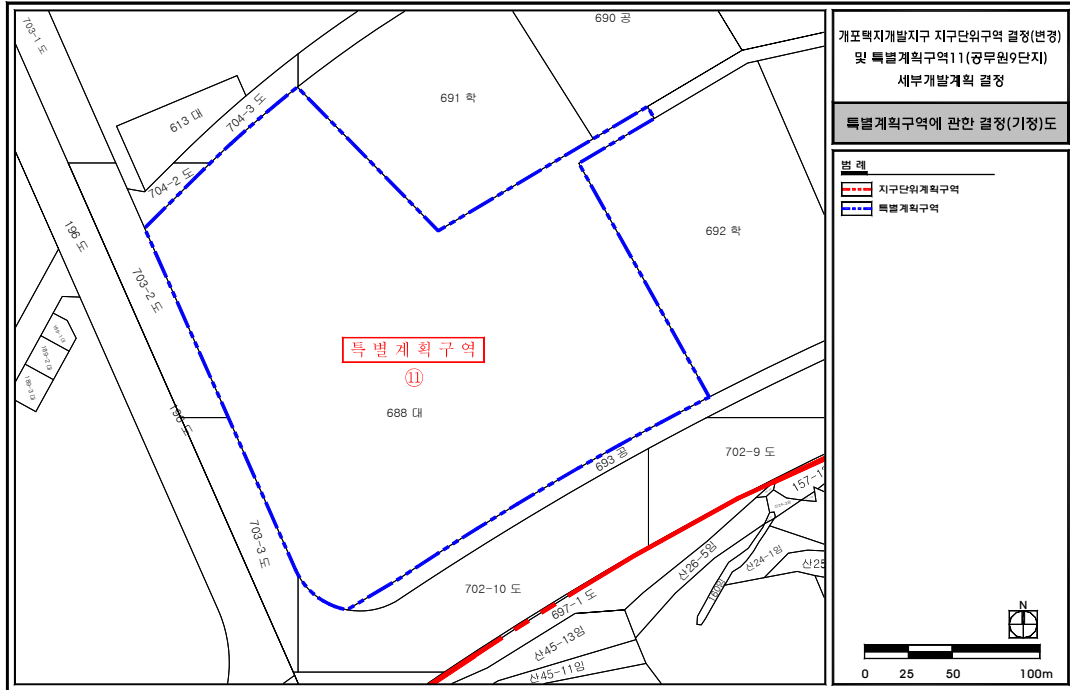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VI.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6),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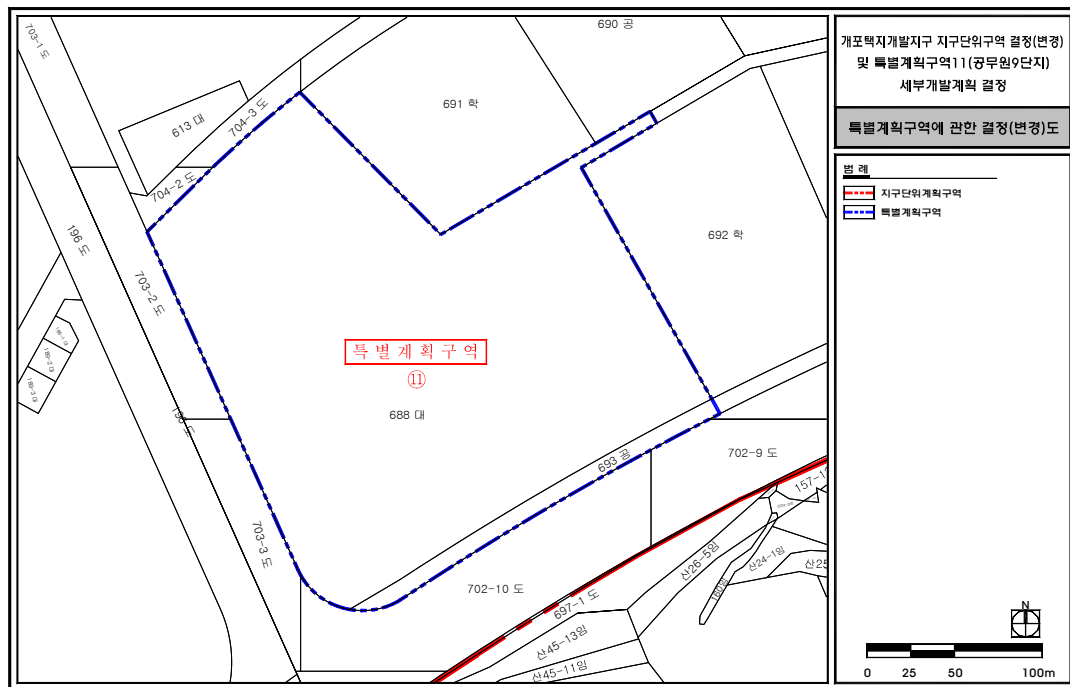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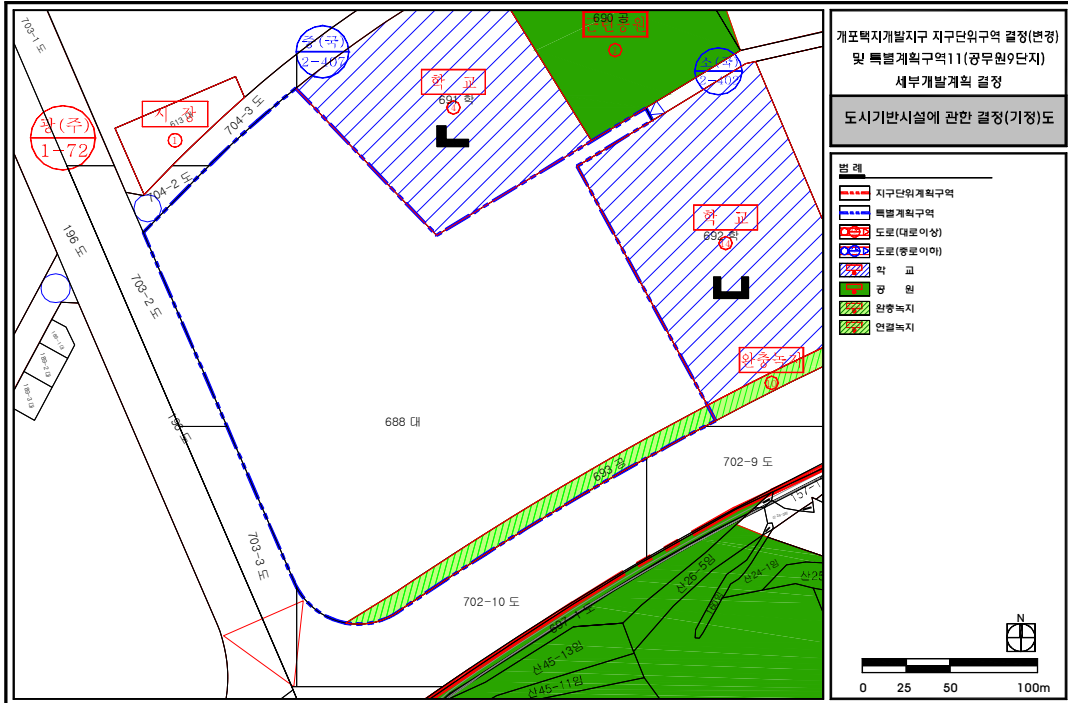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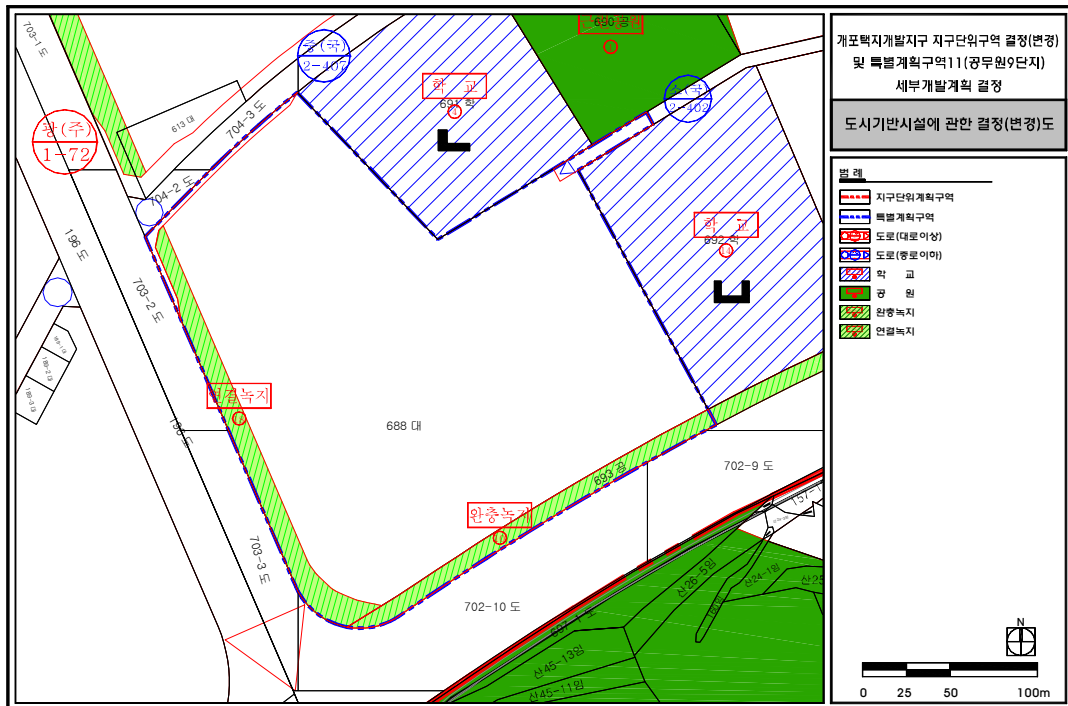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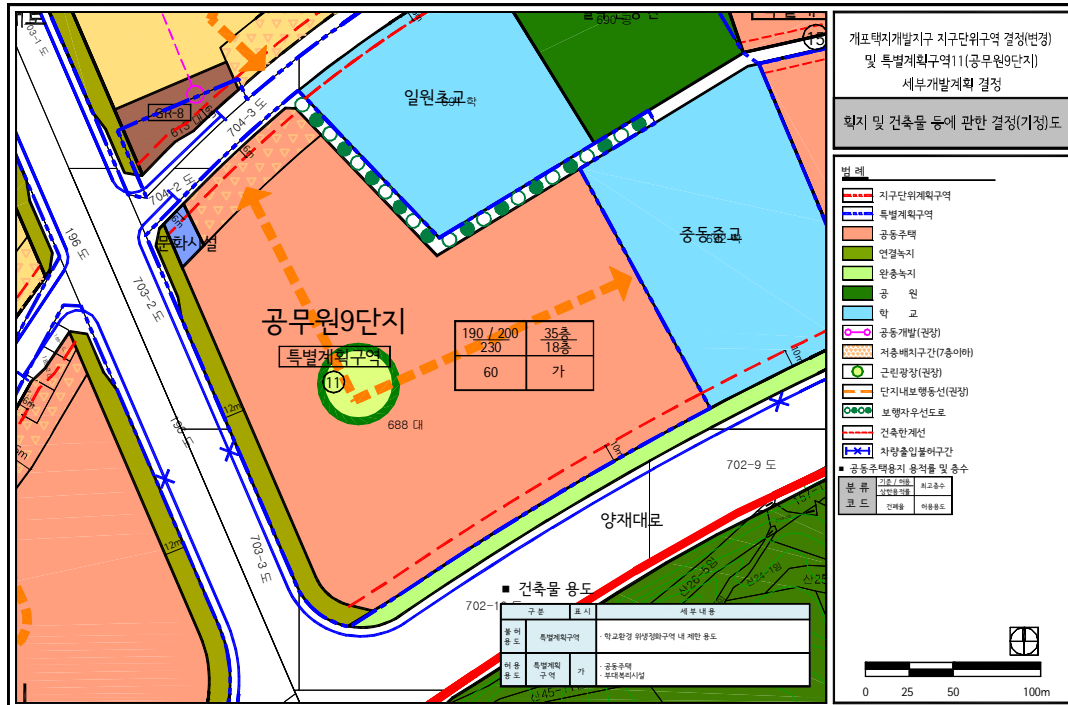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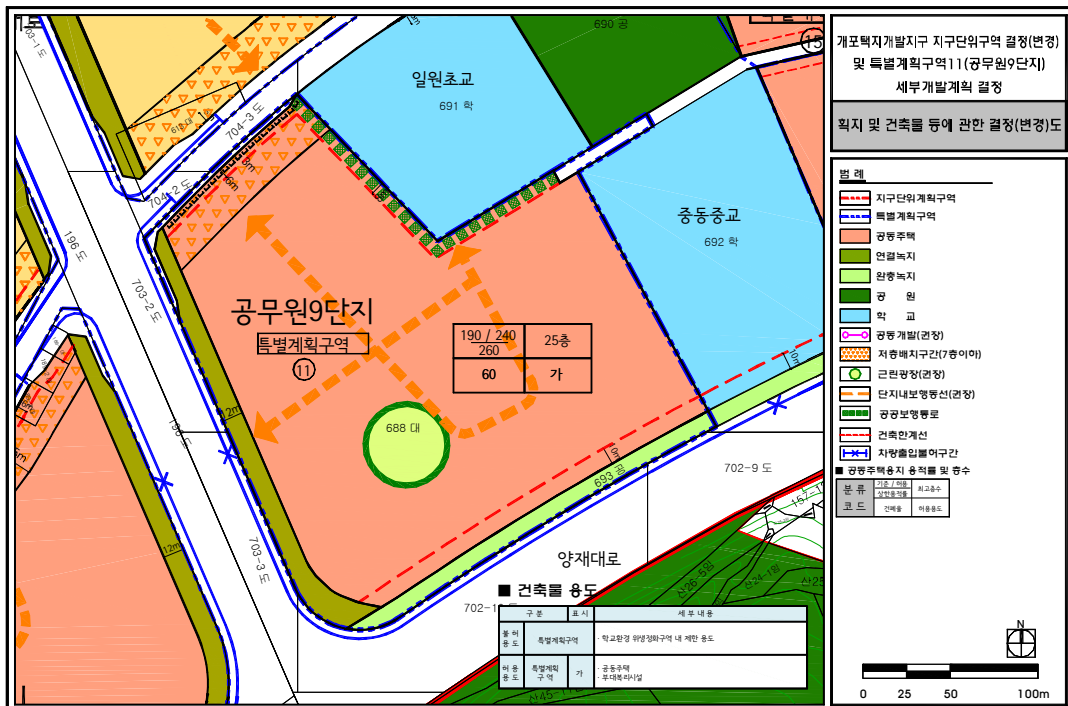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장

1.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안

지정번호	현행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21호	유순정 초상 (柳順汀 肖像)	류순정영정 (柳順汀影幀)

<변경 사유>

- 현재 진주 류씨의 한글 표기는 ‘류’로 표기하고 있음
- 류순정 관련 문화재명과 표기 일치화
 - 류홍영정(柳泓影幀)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93호
 - 류순정 • 류홍부자묘역(柳順汀 • 柳泓父子墓域)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2호

2. 변경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1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 3. 12.), 제2009-308호('09. 8. 6.), 제2009-341호('09. 9. 10.), 제2009-517호('09. 12. 17.), 제2010-195호('10. 5. 27.), 제2010-290호('10. 8. 5.), 제2011-97호('11. 4. 21.), 제2011-186호('11. 7. 7.), 제2012-171호('12. 7. 5.), 제2012-194호('12. 7. 26.), 제2012-243호('12. 9. 13.), 제2013-111호('13. 4. 4.), 제2013-197호('13. 6. 27.), 제2014-29호('14. 1. 23.), 제2014-130호('14. 4. 3.), 제2014-284호('14. 8. 7.), 제2014-395호('14. 11. 20.), 제2017-306호('17. 8. 17.)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9,847.9	-	639,847.9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639,847.9	-	639,847.9	100.0	
주거 용지	소 계	455,014.1	증) 939.5	455,953.6	71.2	
	공동주택(아파트)	381,978.5	증) 939.5	382,918.0	59.8	
	주상복합	73,035.6	-	73,035.6	11.4	
종교·근린생활시설용지		3,915.7	-	3,915.7	0.6	
업무·상업용지		11,963.3	-	11,963.3	1.9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8,954.8	감) 939.5	168,015.3	26.3	
	공공청사	4,450.5	-	4,450.5	0.7	
	문화·복지시설	7,901.5	감) 1,283.1	6,618.4	1.0	
	학교시설	27,767.6	-	27,767.6	4.3	
	공원녹지	37,144.8	-	37,144.8	5.8	
	공공공지	12,421.4	감) 939.5	11,481.9	1.8	
	도 로	79,269.0	-	79,269.0	12.4	
	주 차 장	-	증) 1,283.1	1,283.1	0.2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교육시설	소 계	2	2	27,767.6	-	27,767.6	
	신남초등학교	1	1	15,063.3	-	15,063.3	
	신남중학교	1	1	12,704.3	-	12,704.3	
문화·복지 시설	소 계	5	4	7,901.5	감) 1,283.1	6,618.4	
	사회복지시설	4	3	5,420.7	감) 1,283.1	4,137.6	
	문화시설	1	1	2,480.8	-	2,480.8	
공공청사	공공청사	4	4	4,450.5	-	4,450.5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4) 교통계획 (변경없음)

5) 경관계획 (변경없음)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39,847.9	－	639,847.9	－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54,316.4	－	254,316.4	주택재개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6,624.7	증) 303.3	106,928.0	주택재개발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35,583.5	－	35,583.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81,129.2	감) 303.3	80,825.9	주택재건축
존치구역	신정1존치관리구역	5,315.0	－	5,315.0	지구단위계획
	신정2존치관리구역	35,110.4	－	35,110.4	
	신정3존치관리구역	11,135.4	－	11,135.4	
	신정4존치관리구역	21,948.2	－	21,948.2	
	신정5존치관리구역	16,285.3	－	16,285.3	
	존치구역	69,619.2	－	69,619.2	－
도시계획시설	문화의 거리(25m) 해누리 문화센터	2,780.6	－	2,780.6	－

※ 변경사유 : 신정2-1,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 8)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 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구성비(%)
기정	신정1재정비 촉진구역	254,316.4	79,235.9	43,152.5	24,182.2	-	11,901.2	4.68
기정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624.7	29,058.8	8,579.7	13,675.9	1,283.1	5,520.1	5.18
변경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6,928.0	28,119.3	8,579.7	13,675.9	-	5,863.7	5.48
기정	신정3재정비 촉진구역	35,583.5	12,839.8	5,502.2	681.0	-	6,656.6	18.71
기정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81,129.2	19,780.0	5,487.5	1,928.7	-	12,363.8	15.24
변경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80,825.9	19,780.0	5,487.5	1,928.7	-	12,363.8	15.30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624.7	증)303.3	106,928.0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624.7	증)303.3	106,928.0	100
택지	소 계	76,912.9	증)1,242.8	78,155.7	73.1
	공동주택용지	76,912.9	증)1,242.8	78,155.7	73.1
계획기반시설	소 계	29,058.8	감)939.5	28,119.3	26.3
	도 로	14,608.2	—	14,608.2	13.7
	공 원	3,479.6	—	3,479.6	3.3
	녹 지	2,245.0	—	2,245.0	2.1
	사회복지시설	1,283.1	감)1,283.1	—	—
	공공공지	7,442.9	감)939.5	6,503.4	6.1
	주차장	—	증)1,283.1	1,283.1	1.2
준치지역		653.0	—	653.0	0.6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소 계		106,624.7	증)303.3	106,928.0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142.5	—	13,142.5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202.6	—	9,202.6	8.6	
		제2종일반주거지역	84,279.6	증)303.3	84,582.9	79.1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 도로 (변경없음)
☐ 공원 (변경없음)
☐ 녹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①	공공공지	신정동 1205-2일대	776.8	감)776.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폐 지	②	공공공지	신정동 1221일대	162.7	감)162.7	-	"	
기 정	③	공공공지	신정동 1167-1일대	6,503.4	-	6,503.4	"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유상매입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무상귀속됨에 따라 부담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비정형화된 공공공지를 택지로 변경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사회복지시설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①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1203-11일대	1,283.1	감)1,283.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2008.12.11)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변경	- 주변 사회복지시설들로 인해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가 없고, 시설 매입 비용 확보가 어려움 - 촉진지구 내 임시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2-1지구 공사 시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필요성 증대에 따른 변경

☐ 주차장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주차장	신정동 1203-11일대	-	증)1,283.1	1,283.1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촉진지구 내 임시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2-1지구 공사 시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라)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주된 용도									
	명칭	면적(㎡)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기정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06,624.7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이하	254.6% 이하	27층이하/ 20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지구	87,025.2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지구	19,599.5	신정3동 1150-41번지 일대	60%이하	242.0% 이하	24층이하/ 15,18층이하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초과 ○ 건립비율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 60㎡이하</th><th>전용면적 60㎡~85㎡</th><th>전용면적 85㎡초과</th></tr><tr><td rowspan="2">건립기준</td><td colspan="2">60% 이상</td><td rowspan="2">40% 미만</td></tr><tr><td>20% 이상</td><td>-</td></tr></table> ○ 건립예정 세대수 : 1,904세대(임대주택: 건립호수의 17%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주된 용도											
	명칭		면적(㎡)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변경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06,928.0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이하	254.6% 이하	27층이하/ 20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지구	택지- 1	86,085.7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3,4	1,242.8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60%이하	258.0% 이하	27층이하/ 22층이하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지구		19,599.5	신정3동 1150-41번지 일대	60%이하	242.0% 이하	24층이하/ 15,18층이하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초과 ○ 건립비용 <table><tr><td>구분</td><td>전용면적 60㎡이하</td><td>전용면적 60㎡~85㎡</td><td>전용면적 85㎡ 초과</td></tr><tr><td rowspan="2">건립기준</td><td colspan="2">60% 이상</td><td rowspan="2">40% 미만</td></tr><tr><td>20% 이상</td><td>-</td></tr></table> ○ 건립예정 세대수 : 1,904세대(임대주택: 건립호수의 17% 이상)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 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구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 초과																	
건립기준	60% 이상		40% 미만																		
	20% 이상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마)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변경)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변경)

구분	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624.7	증)303.3	106,928.0	
		신정2-1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87,025.2	증)303.3	87,328.5	
		신정2-2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50-41번지 일대	19,599.5	-	19,599.5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분할사업 시행지구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624.7	증)303.3	106,928.0	
2-1 지구	소 계		87,025.2	증)303.3	87,328.5	
	택지	소 계	60,663.5	증)1,242.8	61,906.3	
		공동주택용지	60,663.5	증)1,242.8	61,906.3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6,361.7	감)939.5	25,422.2	
		도 로	14,601.9	-	14,601.9	
		공 원	788.8	-	788.8	
		녹 지	2,245.0	-	2,245.0	
		사회복지시설	1,283.1	감)1,283.1	-	
		공공공지	7,442.9	감)939.5	6,503.4	
		주차장	-	증)1,283.1	1,283.1	
2-2 지구	소 계		19,599.5	-	19,599.5	
	택지	소 계	16,249.4	-	16,249.4	
		공동주택	16,249.4	-	16,249.4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697.1	-	2,697.1	
		도 로	6.3	-	6.3	
		공 원	2,690.8	-	2,690.8	
존치지역			653.0	-	653.0	신서교회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 면적(㎡)				순부담(①-②-③-④)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면적	구성비 (%)
기정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06,624.7	29,058.8	8,579.7	13,675.9	1,283.1	5,520.1	5.18
	신정2-1 지구	87,025.2	26,361.7	8,337.8	11,424.5	1,283.1	5,316.3	6.11
	신정2-2 지구	19,599.5	2,697.1	241.9	2,251.4	-	203.8	1.04
변경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06,928.0 (증 303.3)	28,119.3 (감 939.5)	8,579.7	13,675.9	-	5,863.7 (증 343.6)	5.48 (증 0.3)
	신정2-1 지구	87,328.5 (증 303.3)	25,422.2 (감 939.5)	8,337.8	11,424.5	-	5,659.9 (증 343.6)	6.48 (증 0.37)
	신정2-2 지구	19,599.5	2,697.1	241.9	2,251.4	-	203.8	1.04

※ 변경사유 : 신정2-1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전체	1지구	2지구	비고
인구수		5,027	3,952	1,075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40㎡이하	115	90	25	임대주택 337세대 1지구 : 266 2지구 : 71
	40㎡~60㎡	615	460	155	
	60㎡~85㎡	1,075	848	227	
	85㎡이상	99	99	-	
	계	1,904	1,497	407	

다) 신정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라)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정동 1200번지 일원	81,129.2	감) 303.3	80,825.9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1,129.2	감)303.3	80,825.9	100.0
택지	소계	62,569.4	감)303.3	62,266.1	77.0
	공동주택	62,569.4	감)303.3	62,266.1	77.0
계획기반시설	소 계	18,559.8	-	18,559.8	23.0
	도 로	10,669.8	-	10,669.8	13.2
	공 원	6,538.1	-	6,538.1	8.1
	공공청사	398.8	-	398.8	0.5
	사회복지시설	953.1	-	953.1	1.2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소 계		81,129.2	감)303.3	80,825.9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9.1	-	1,009.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6,201.7	-	16,201.7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2,569.4	감)303.3	62,266.1	7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9.0	-	1,349.0	1.7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1,129.2	-	-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361	-	-	361	-	-

☐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1,129.2	공공청사	398.8	신정동 1160-25번 지 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사회복지 시설	953.1	신정동 1195번지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획지1	62,569.4	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1층이하 (18층이하)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837세대 [임대 11세대(0.6%)] - 전용면적 60㎡이하 : 1,476세대(80.4%) - 전용면적 60~85㎡이하 : 291세대(15.8%) - 전용면적 85㎡초과 : 70세대(3.8%)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40% 이내 - 평균 16층 → 평균 18층(12.5%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0,825.9	공공청사	398.8	신정동 1160-25번 지 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사회복지 시설	953.1	신정동 1195번지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획지1	62,266.1	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1층이하 (18층이하)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837세대 [임대 11세대(0.6%)] - 전용면적 60㎡이하 : 1,476세대(80.4%) - 전용면적 60~85㎡이하 : 291세대(15.8%) - 전용면적 85㎡초과 : 70세대(3.8%)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40% 이내 - 평균 16층 → 평균 18층(12.5%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변경사유 : 신정4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변경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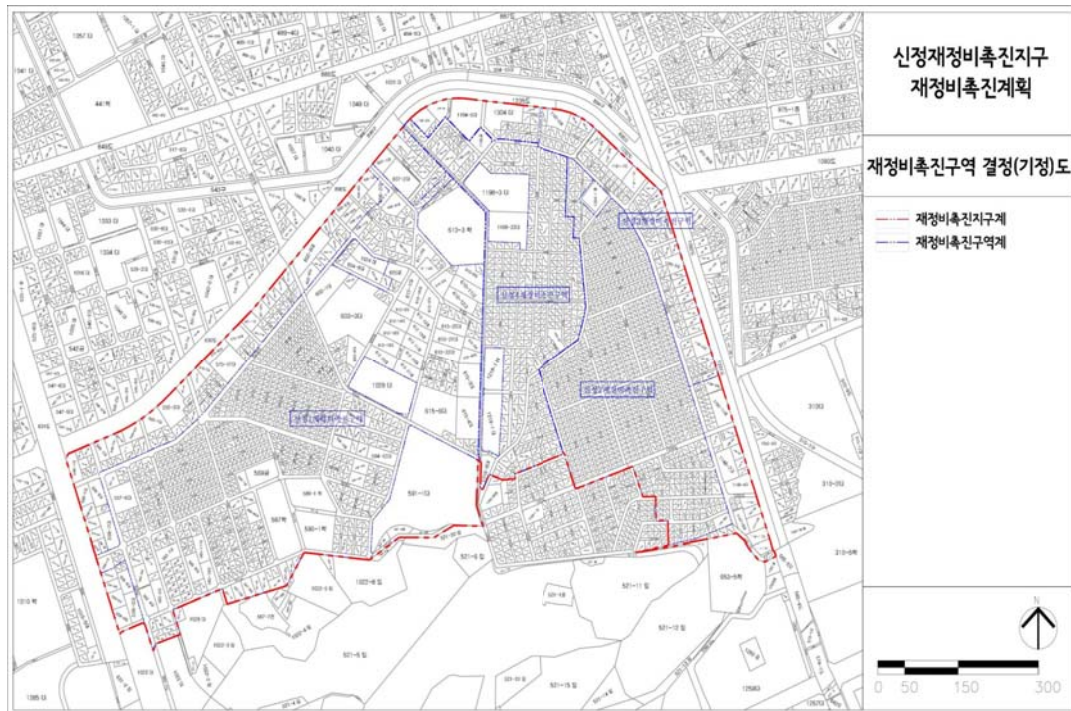
(차)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5. 관계도면 및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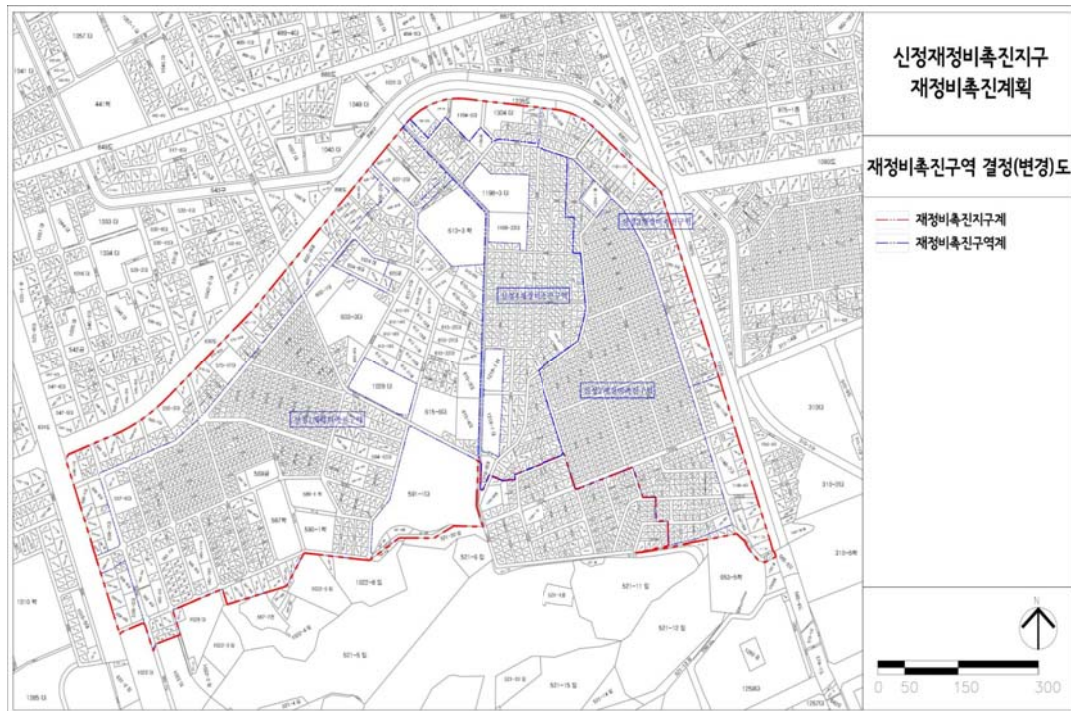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 02-2620-3511)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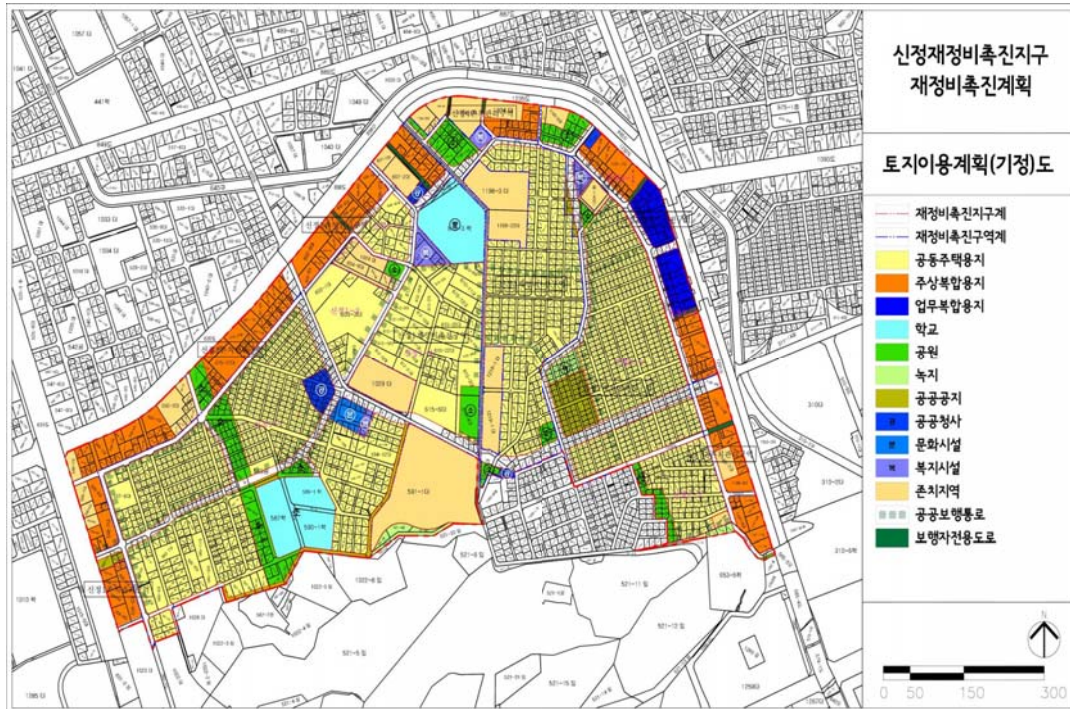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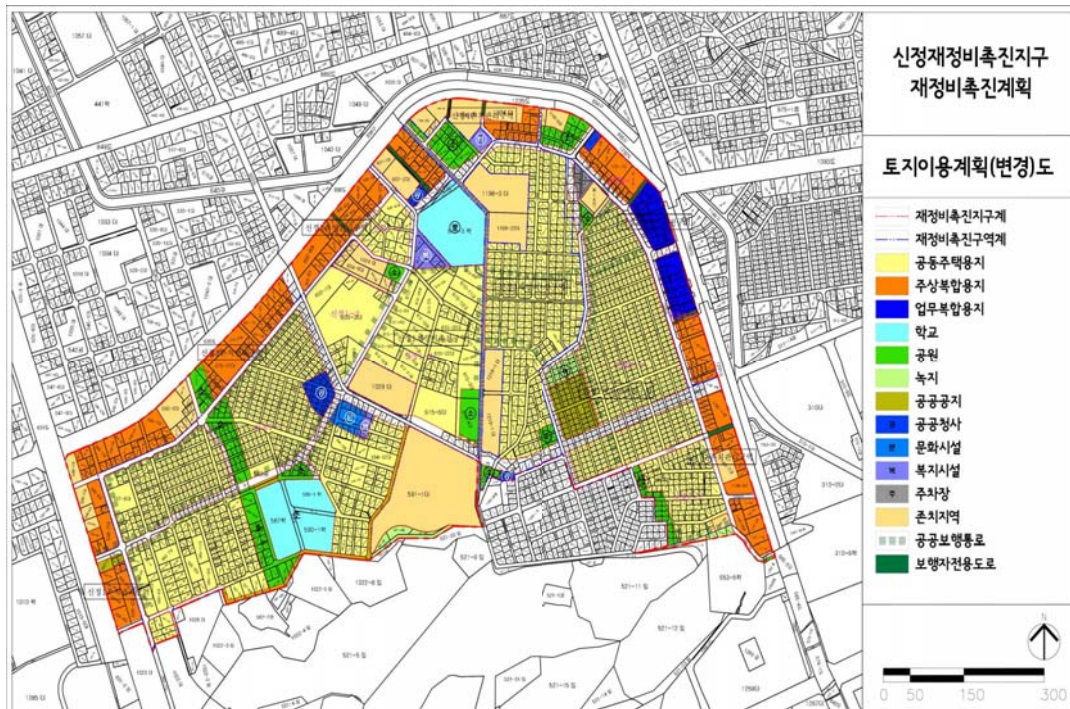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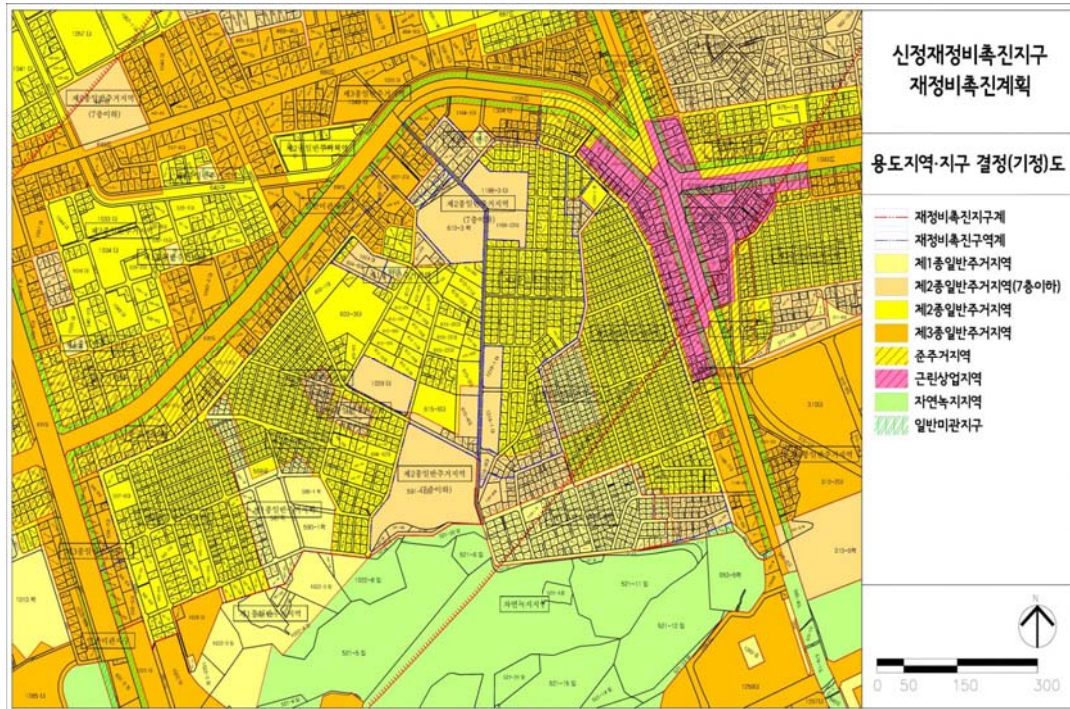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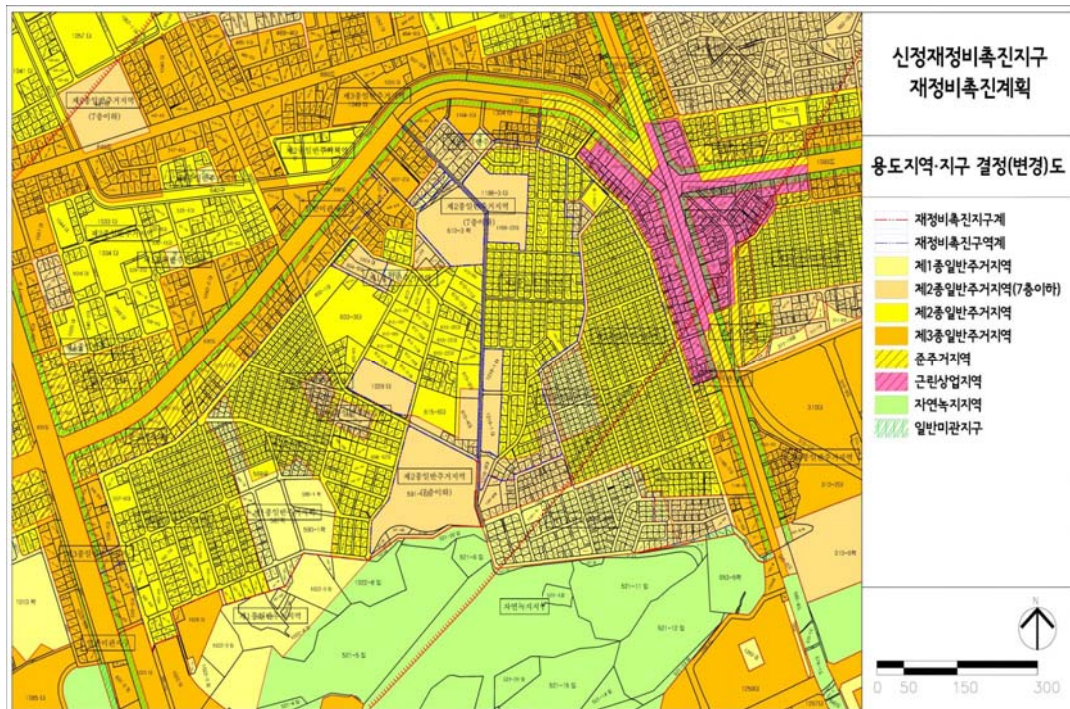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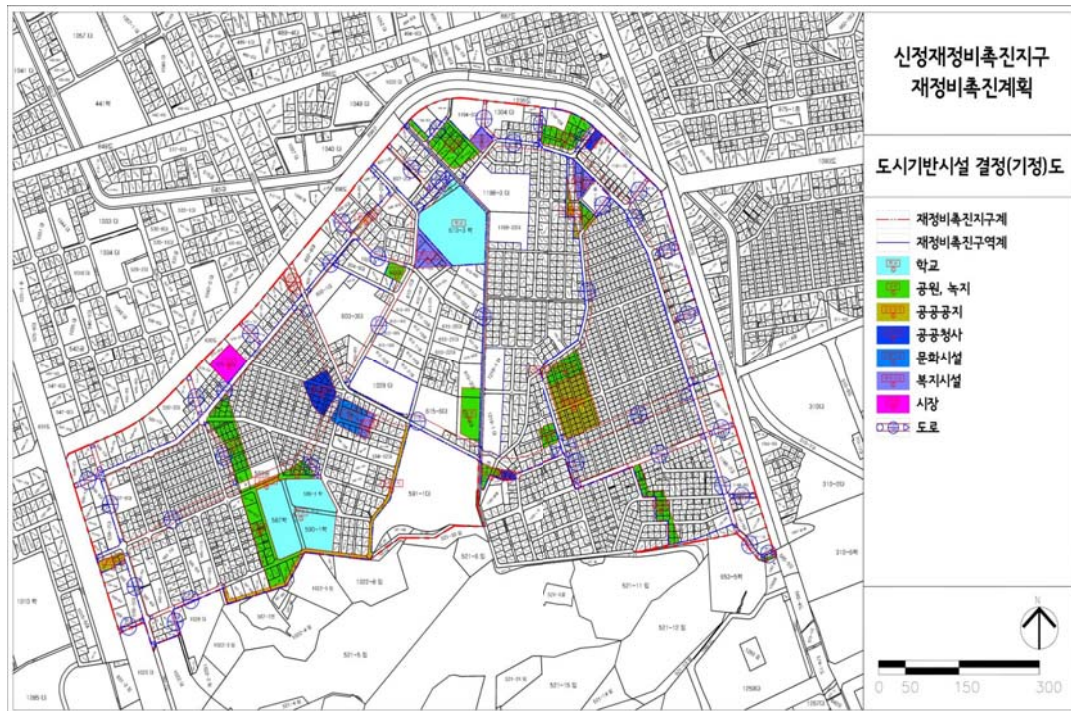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68-8 일원	1,873,390.1	감) 10.0	1,873,380.1	

※ 장위2구역 지적편입 오류 정정 반영(감 10.0㎡)에 따른 면적 정정(장위2구역 10.0㎡감소, 장위지구 10.0㎡감소)

※ 장위12 및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장위8, 장위9 및 장위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3.30.)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촉진계획 변경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변 경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873,390.1	감) 10.0	1,873,380.1	100.0	장위2 지적편입 오류 정정
주거	소 계	1,174,047.5	-	1,174,047.5	62.67	
	공동주택	1,083,320.9	-	1,083,320.9	57.83	
	복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	90,726.6	-	90,726.6	4.8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63,115.1	감) 10.0	663,105.1	35.40	장위2 지적편입 오류 정정
	도 로	274,581.2	감) 10.0	274,571.2	14.66	장위2 지적편입 오류 정정
	공 원	209,456.0	-	209,456.0	11.18	
	녹 지	55,962.3	-	55,962.3	2.99	
	학 교	52,540.2	-	52,540.2	2.80	
	공공공지	43,243.7	-	43,243.7	2.31	
	공공청사	14,153.4	-	14,153.4	0.75	
	문화시설	5,034.0	-	5,034.0	0.27	
	사회복지시설	2,861.0	-	2,861.0	0.15	
	연구시설	2,604.0	-	2,604.0	0.14	
	청소년수련시설	2,847.3	-	2,847.3	0.15	
기타	소 계	36,227.5	-	36,227.5	1.93	
	종교시설	27,462.7	-	27,462.7	1.47	
	근린생활시설	8,666.8	-	8,666.8	0.46	
	의료시설	98.0	-	98.0	0.01	

※ 장위2구역 지적편입 오류 정정 반영(감 10.0㎡)에 따른 면적 변경(장위2구역 10.0㎡감소, 장위지구 10.0㎡감소)

※ 장위12 및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장위8, 장위9 및 장위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3.30.)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83,483인 / 27,170세대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인구(인)	83,489	감) 6	83,483	
세대수(세대)	27,172(72)	감) 2	27,170(72)	

※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85㎡ 이상 세대수 중 (72)세대를 부분임대로 계획

※ 장위12 및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장위8, 장위9 및 장위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3.30.)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방식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873,390.10	감) 10.0	1,873,380.10	－	－
촉진 구역	소 계 (15개구역)		1,766,949.30	감) 10.0	1,766,939.30	－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원	80,513.30	－	80,513.30	주택재개발	
	장위2구역	성북구 장위동 290-9 일원	25,204.00	감) 10.0	25,194.00	주택재개발	
	장위3구역	성북구 장위동 305 일원	66,011.00	－	66,011.00	주택재개발	
	장위4구역	성북구 장위동 62-1 일원	153,501.00	－	153,501.00	주택재개발	
	장위5구역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원	89,879.40	－	89,853.40	주택재개발	
	장위6구역	성북구 장위동 25-55 일원	105,163.90	－	105,163.90	주택재개발	
	장위7구역	성북구 장위동 189-3 일원	87,151.70	－	86,921.70	주택재개발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동 85 일원	119,371.00	－	119,371.00	주택재개발	해제
	장위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 일원	85,878.00	－	85,878.00	주택재개발	해제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4,245.00	－	94,245.00	주택재개발	
	장위11구역	성북구 장위동 68-141 일원	159,451.00	－	159,451.00	주택재개발	해제
	장위12구역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원	48,514.00	－	48,514.00	주택재개발	해제
	장위13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7 일원	318,415.00	－	318,415.00	주택재개발	해제
	장위14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원	144,201.00	－	144,201.00	주택재개발	
	장위15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원	189,450.00	－	189,450.00	주택재개발	
준치 구역	준치 관리 구역	소 계	106,441.80	－	106,441.80	－	－
		준치구역	준치시설	106,441.80	－	106,441.80	－

※ 장위2구역 지적편입 오류 정정 반영(293-52구 편입오류, 장위2구역 10㎡ 감소, 촉진지구 10㎡ 감소)

※ 장위12 및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장위8, 장위9 및 장위11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3.30.)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1)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장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204.0	감) 10.0	25,194.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69.0	-	369.0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61.8	감) 10.0	19,951.8	79.0
자연녹지지역		4,873.2	-	4,873.2	19.5

※ 장위2구역 지적편입 오류 정정 반영(293-52구 편입오류, 10㎡ 감소)

- (3) 장위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5) 장위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준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장위1구역 : 변경없음
 나) 장위2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5,204.0	감) 10.0	25,194.0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7,336.0	감) 10.0	7,326.0	29.11	
	공 원	4,077.0	－	4,077.0	16.18	
	도 로	2,693.0	감) 10.0	2,683.0	10.68	
	공공공지	566.0	－	566.0	2.25	
택 지 (획 지)	소 계	17,868.0	－	17,868.0	70.89	
	2 - 1	17,868.0	－	17,868.0	70.89	

※ 장위2구역 지적편입 오류 정정 반영(293-52구 편입오류, 10㎡ 감소)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2구역	25,204.0	2-1	17,868.0	장위동 290-9일대	51,922.7	복합용지	30 이하	281.6 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변경	장위 2구역	25,194.0	2-1	17,868.0	장위동 290-9일대	50,169.6	복합용지	30 이하	281.6 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예정세대수 : 515세대 (임대주택 : 9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40세대(7.77%) [임대 : 40세대] - 전용면적 40~50㎡ : 37세대(7.18%) [임대 : 37세대] - 전용면적 50~60㎡ : 167세대(32.43%) [임대 : 15세대] - 전용면적 60~85㎡ : 268세대(52.04%) - 전용면적 85㎡이상 : 3세대(0.58%)
	변경	• 건립예정세대수 : 513세대 (임대주택 : 9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40세대(7.77%) [임대 : 40세대] - 전용면적 40~50㎡ : 37세대(7.18%) [임대 : 37세대] - 전용면적 50~60㎡ : 165세대(32.43%) [임대 : 15세대] - 전용면적 60~85㎡ : 268세대(52.04%) - 전용면적 85㎡이상 : 3세대(0.5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단, 지하부는 6m로 완화 적용) • 월계로, 장위동길, 장월로, 순환가로, 국지도로변 : 6m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2구역	17,868.0	-	3,545	· 40세대(7.77%)	· 40㎡이하	
					· 37세대(7.18%)	· 40~50㎡이하	
					· 15세대(2.91%)	· 50~60㎡이하	
					· 전체 : 92세대(17.89%)	-	
변경	장위2구역	17,868.0	-	5,414	· 40세대(7.77%)	· 40㎡이하	
					· 37세대(7.18%)	· 40~50㎡이하	
					· 15세대(2.91%)	· 50~60㎡이하	
					· 전체 : 92세대(17.89%)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 내용은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다) 장위3구역 ~ 거) 장위15구역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계		1,873,390.1	감) 10.0	1,873,380.1	100.0%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862,380.9	-	1,862,370.9	99.4%
	제1종일반주거지역	213,250.9	-	213,250.9	11.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1,379.8	-	71,379.8	3.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513,199.7	-	1,513,199.7	80.8%
	제3종일반주거지역	64,550.5	감) 10.0	64,540.5	3.4%
자연녹지지역		11,009.2	-	11,009.2	0.6%

※ 장위12 및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장위8, 장위9 및 장위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3.30.)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촉진계획 변경결정시 일괄 반영하여 고시 예정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장위2구역	· 용도지역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12층) : 감) 10.0㎡	· 지적편입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선형변경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녹 지 : 변경없음
 (3) 공 원 : 변경없음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5) 시 장 : 변경없음
 (6)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7)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8) 공공청사 : 변경없음
 (9) 학 교 : 변경없음
 (10) 문화시설 : 변경없음
 (11)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12)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13) 하수도 : 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게재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6)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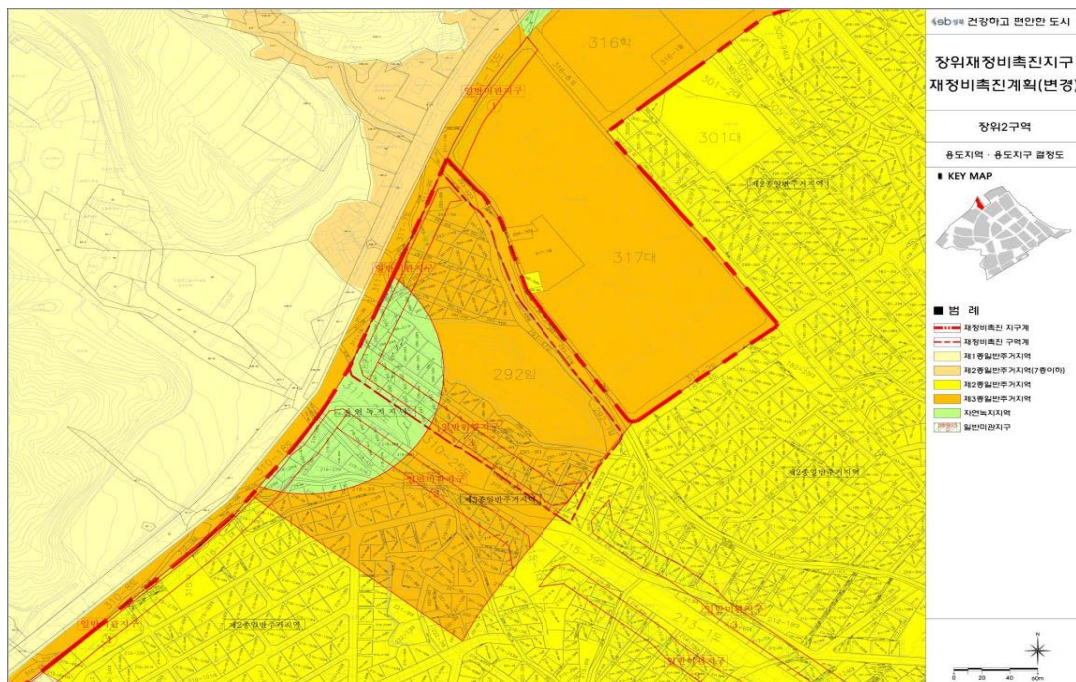
※ 첨부도면

1) 장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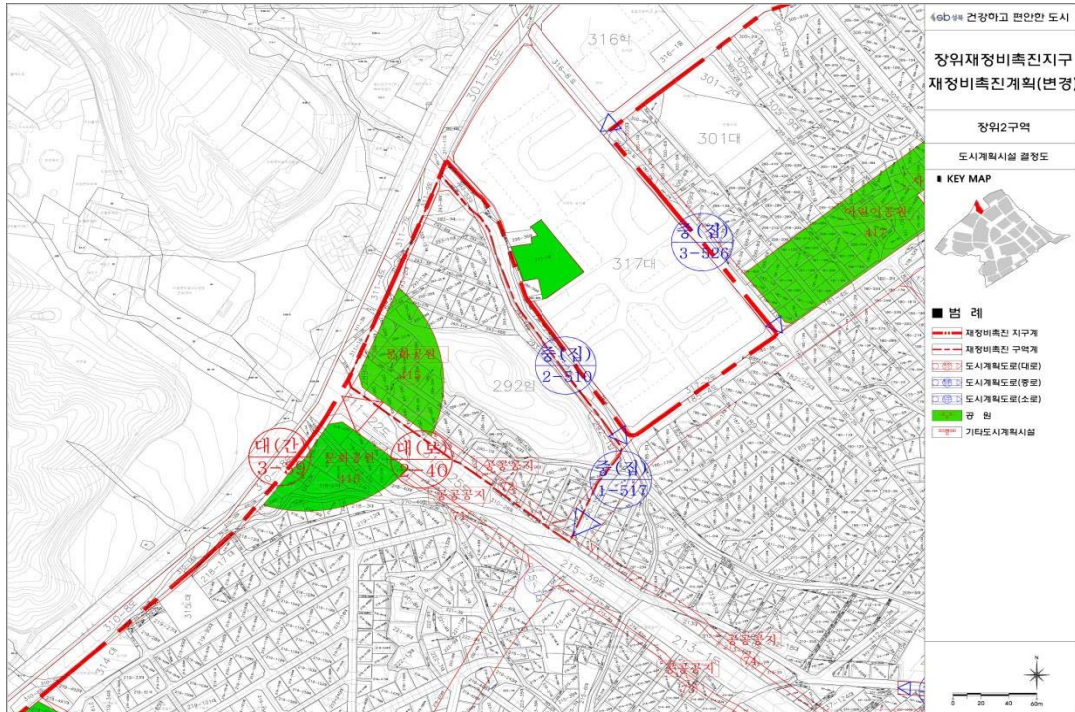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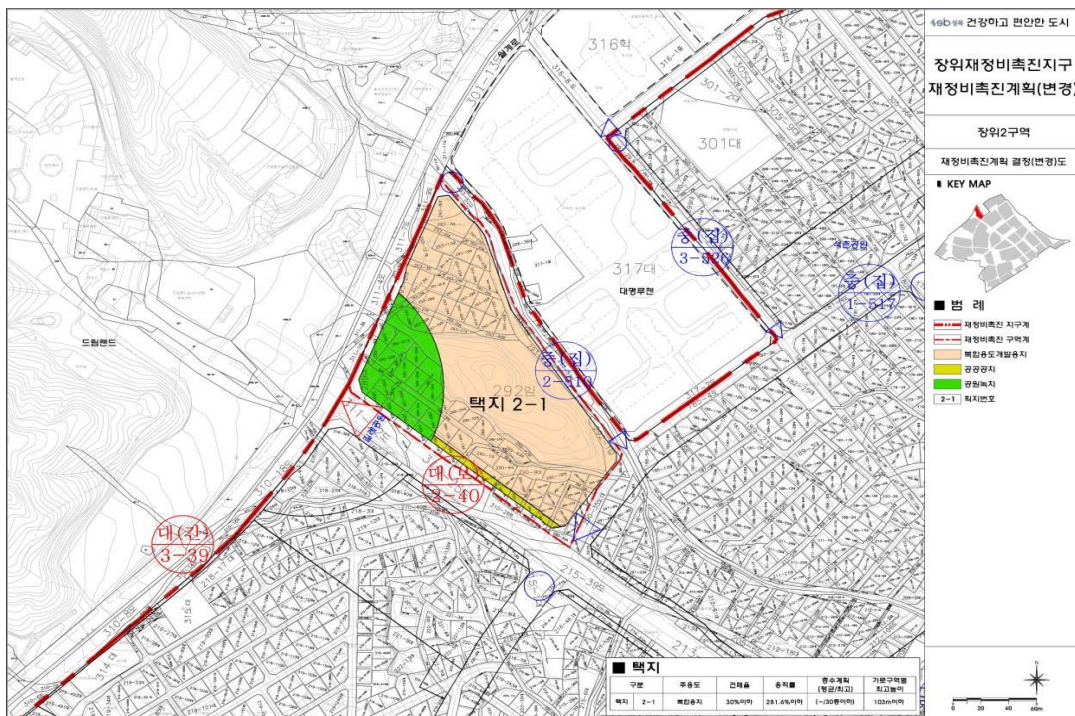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70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5건 : 명단 별첨)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14건 : 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4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취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753	뉴웨이인터네셔널(주)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9길 16 동진빌딩 401호 (장안동)	2016-11-01
2	2055	(주)성심씨앤에어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74 (서교동 483-14)	2016-11-24
3	3187	주제티어스로지스틱스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48 (대흥동) 201호 (대흥빌딩)	2016-10-01
4	3875	주식회사 위드유물류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46 (서교동, 남성빌딩) 212호	2016-12-24
5	4041	(주)에스아이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33 (홍제동, 조이빌딩) 7층	2016-11-05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업무정지 60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2106	(주)한국화물로지스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1007호 (양평동3가, 우림비즈니스센터)	2017-01-22
2	2140	(주)에이티엘월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3, 대영빌딩(서소문동)	2017-04-02
3	2248	해공해운항공(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8길28 (북창동)	2017-02-17
4	3219	(주)금용항공해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12, 동아빌딩 202호 (답십리동)	2017-01-21
5	3923	(주)케이피엘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16, (북창동, 우성빌딩) 8층	2017-01-08
6	4097	(주)창대엠알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45-3, 2층 (장안동, 한신상가)	2017-03-02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7	4121	세웅로지스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1 지1층 4호 (논현동, 파크랜드빌딩)	2017-03-09
8	4285	씨캐리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1동 3603호 (문래동3가55-16, 영등포 SK 리더스뷰)	2017-03-04
9	4299	(주)신풍로지스틱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87 (양재동, 두상빌딩) 2층	2017-03-25
10	4316	(주)매트로오션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	2017-04-30
11	4409	포디엄라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502호	2017-01-07
12	4430	지피에스국제운송(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갈월동, KCC IT빌딩) 702호	2017-02-25
13	4442	(주)아트참글로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8가길 29 (목동) 2층	2017-04-01
14	4467	에이로그코리아(주)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67 (옥인동, 옥인빌딩) 301호	2017-03-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7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7. 10. 26.(목) ~ 2017. 11. 8.(수)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청문 실시		예정처분
				일시	주재자	
서정종합건설(주) (김만호)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272 10층 (목동)	건축 공사업 16-0564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사항(보증가능금액) 미보완	2017.11.14. (화) 14:00	시설안전과 주무관 박현진	등록말소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공고내용
- 가.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 다. 준비서류 : ① 참석자 신분증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선임통지서 ④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⑤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 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초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74호

2018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공고

2018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강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위촉개요

- 가.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강사운영 : 자치구청장)
- 나. 위촉기간 : 1년 ('18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
- ※ 위촉일자 및 장소는 최종 선발이후 추후 통보하고, 강사연수 병행 예정
- 다. 강사운영 : 최종합격자를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풀로 구성, 자치구는 교육강사풀 안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
- 라. 추진일정

내용	위촉계획 공고 (시·구 공통)	⇒	지원서류 접수 (자치구)	⇒	지원서류 제출 (자치구→시)	⇒	서류평가 (시)
시기	10.27.~11.9.		11.7.~11.9.		11.10.		11.20.~11.21.
							↓
내용	강사위촉/연수 (시)	⇐	최종결과 발표 (시·구 공통)	⇐	강의평가 (시)	⇐	서류평가결과 / 강의평가 안내 (시·구 공통)
시기	'18. 2월초(예정)		12.18.(예정)		12.1.~12.11.(예정)		11.24.(예정)

마. '18년도 민방위 교육일정 : '18년 3월 ~ 12월 (자치구별 일부 상이)

2. 세부내용

가. 위촉과제 및 인원

과 목	행복서울	안보서울	안전서울		
과 제	인문학 · 인성	민방위 소양	응급처치	화재안전	핵 및 화생방방호와 지진 대피요령
130명	자치구 위임 (금번 선발과 무관)	50명	30명	25명	25명

- ※ 교육중점 이해도 및 강의 적합여부를 고려하여 위촉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나. 자격기준 :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이력서 및 증빙자료로 검증)
 다. 과제별 교육중점 (반드시 교육내용에 맞는 강의안 작성)

구 분	과 제 별 교 육 중 점	선발주관 / 인 원
행복서울 / 1H (인문학 · 인성)	· 개인행복(인생관, 직업관 등) · 가정행복(부부, 부모, 자식관계 등) · 내 고장 사랑(향토사 등)	자치구 위 임
안보서울 / 1H (민방위 소양)	· <u>민방위 소양</u> - 민방위대 중요성 및 임무와 역할 (10%) - 민방위 조직 · 편성, 교육, 동원, 민방위 장비 종류 (60%) - 경보(민방공/재난) 구분, 대피소 찾기(안전디딤돌 앱 활용) (30%) ※ 예비군 교육과 유사한 안보교육내용 제외	서울시 / 50명
안전서울 / 2H (재난시 대응)	· <u>응급 처치</u> - 응급처치 목적 및 필요성 (10%)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신고, 환자상태확인 등) (20%)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 상처 등 (70%)	서울시 / 30명
	· <u>화재 안전</u> - 상황대처 및 소화기 · 소화전 특성과 사용방법 (40%) - 가옥(아파트) 화재 시 가족 및 주민 대피방법 (30%) - 로프(매듭법), 완강기, 화재감지기 등 사용방법 (30%)	서울시 / 25명
	· <u>핵 및 화생방방호와 지진 대피요령</u> - 화생방 및 민방공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40%) ※ 일반방독면 착용방법 포함, 작용제 특성 이론 제외 -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30%) - 비상대비 물자 및 사용요령(평시 가정 준비, 화생방) (30%)	서울시 / 25명

3. 지원서 접수

가. 일 시 : '17. 11. 7.(화) ~ 9.(목) / 일자별 10 ~ 17시(12~13시 제외)

나. 장 소 : 자치구 담당부서 (모든 자치구 중 1곳으로만 접수하되 어디든 무방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우편접수 불가)

- 1) 이메일 접수 시 이력서와 지원동의서는 서명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전 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관련내용 사전확인 후 이메일로 접수
- 2)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작성양식은 붙임자료 참고)

구 분	작 성 방 법 (유의사항)	제출형태
① 이력서	· 생년월일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지) ·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시 인정 불가) · 실무경력은 증빙 가능내용만 기재 (증빙서류 제출)	①~④번 서류를 PDF파일 1건으로 종합하여 제출
② 강의계획서	· 핵심위주 작성(1장 이내) · 강의시간계획 포함 (50분 기준)	
③ 지원동의서	· 자필 서명	
④ 증빙자료	·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자료 제출(경력, 자격증명) ※ 해당자만 제출, 별도양식 없음	
⑤ 강의자료	· 과목별 교육내용(2쪽 참고)을 중심으로 50분 강의용으로 작성(관련 동영상 제출하지 않음)	PPT파일 1건

3) 유의사항 : 제출 후 수정불가, 접수기한 경과 시 미접수

4. 서류평가

가. 일 정 : '17. 11. 20.(월) ~ 21.(화)

나. 대 상 자 : 자치구로 지원하여 서울시로 서류가 제출된 지원자

다. 평가내용 : 경력, 자격증, 강의자료 등 (강의자료 중점 확인)

- 1) 과제별 교육중점 포함여부 및 내용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2) 과제별 최종 위촉인원의 120%를 서류합격 대상으로 선정
- ※ 단, 교육중점 이해도 및 강의 적합여부를 고려하여 120%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라. 결과발표 : '17. 11. 24.(금) 예정

※ 자치구에서 개별결과 안내, 합격자는 강의평가 세부일정 통보 병행

5. 강의평가

가. 일 정 : '17. 12. 1.(금) ~ 11.(월) / 서류결과 통보 시 평가일 안내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청 지하 3층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대 상 자 : 서류평가 합격자 전원

라. 평가내용

- 1) 과목별 위촉인원 고려 강의평가 점수 상위자 선발 (서류평가점수 미반영)
 ※ 단, 교육중점 이해도 및 강의 적합여부를 고려하여 위촉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2) 제출 강의자료 전체를 요약하여 10분 강의
 - 3) 실기강사는 체험과제 지도 및 시범 포함하여 평가
- 마. 최종결과 발표 : '17. 12. 18.(월) 예정
- ※ 자치구에서 개별결과 안내, 합격자는 강의평가 세부일정 통보 병행

6. 강사위촉 (연수)

- 가. 위촉일자 : '18년 2월 초 (추후 일정통보) / 강사연수 병행
- 나. 위촉기간 : 1년 ('18년 당해연도)
- ※ 단, 최종 강사위촉자는 차기년도 지원 시 서류평가 면제 후 강의평가만 실시
- 다. 강사운영 : 최종합격자를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풀로 구성, 자치구는 교육강사풀 안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

7. 참고사항

- 가. 지원자는 1개 과제를 선택하여 1개 자치구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선발 후 지원과제만 강의 가능
- 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 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는 수정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라.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된 문제발생 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 위촉 관련 개인점수 및 불합격 사유 등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바. 위촉 후 강사 개인의 정치·종교관 등으로 민원 및 언론보도 등 물의를 야기할 경우 즉시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서명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연락처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2133-4540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330-1032
종로구	자치행정과	2148-1473	마포구	자치행정과	3153-8333
중 구	안전치수과	3396-4584	양천구	안전재난과	2620-4396
용산구	안전재난과	2199-7973	강서구	자치안전과	2600-6993
성동구	자치행정과	2286-5151	구로구	도시안전과	860-2326
광진구	총 무 과	450-7257	금천구	도시안전과	2627-1058

구 분	부서명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연락처
동대문구	안전담당관	2127-4384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2670-3183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2094-0295	동작구	자치행정과	820-1226
성북구	도시안전과	2241-4385	관악구	안전관리과	879-5823
강북구	자치행정과	901-6102	서초구	안전도시과	2155-7123
도봉구	재난안전과	2091-4262	강남구	재난안전과	3423-6954
노원구	자치행정과	2116-3126	송파구	자치행정과	2147-2246
은평구	자치안전과	351-6333	강동구	자치안전과	3425-5163

- 붙임 1.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이력서, 지원동의서, 강의계획서)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7년 민방위 표준교재
(사이트 주소 : <http://safe.seoul.go.kr/?p=52630>)
3.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사이트 주소 : <http://safe.seoul.go.kr/?p=52566>).

【붙임1】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

이 력 서
 사진파일 삽입
 또는 사진부착
 (3.5×4.5cm)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세)			
현 주 소				
현(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출신구분 입영(임관)일		계 급	
	전역일자		복무기간	년 월(개월)

☐ 학 력

학 교 명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전 공	학 위

☐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기관	비 고

☐ 실무경력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만 기재)

근무 또는 참여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또는 사업명	담당분야 또는 직책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지 원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2018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을 위해 이력서 등에 기재하고 제출한 서류일체에 허위기재 및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며, 차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민방위 교육강사 해촉에 동의합니다.

또한 강사위촉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에 동의하며, 민방위교육 시 부적절한 교육내용 및 언행 등으로 민원, 언론보도 등의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취하는 해촉, 강의금지 등의 조치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017. . .

동의인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강 의 계 획 서

<과목명, 강사성명>

☐ 교육중점

- 신명 태명조 14
-

☐ 교육내용 ※ 항목별 교육 예상시간 기재

- 신명 태명조 14 (00분)
- (00분)
- (00분)
- (00분)
- (00분)

☐ 결 론

- 신명 태명조 14
-
-

【붙임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7년 민방위 표준교재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물 참고 : <http://safe.seoul.go.kr/?p=52630>

【붙임3】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물 참고 : <http://safe.seoul.go.kr/?p=5256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7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심현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6번길 ** (하성면)	일시 : 2017-08-02 02:51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김안수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49번길 1*-7, *-0*호(석남동)	일시 : 2017-08-03 10:1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7m 초과	과태료:30만원
이영수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천송동)	일시 : 2017-08-24 01:09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율현도 헌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박영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56, **2-2**호(동읍)	일시 : 2017-06-06 07:16 장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염동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 (포곡읍)	일시 : 2017-06-26 10:56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1.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3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8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선용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23, ***동 ****호 (가정동)	일시: 2017-06-15 05:13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길이 2.9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덕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10, ***호 (와동)	일시: 2017-08-08 05:15 장소: 영등포구 양평동 내용: 제한 폭 0.18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이숙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3길 ** (방화동)	일시: 2017-08-12 11:06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1.35t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이옥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17, ***호 (신월동)	일시: 2017-08-18 00:04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심은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11, ***동 ***호 (탄현동, 탄현마을)	일시: 2017-08-22 09:47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4t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공용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156번길 *-***, ***호 (연수동)	일시: 2017-08-22 14:32 장소: 목동교동측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4t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김병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 (상동)	일시: 2017-09-04 06:52 장소: 신월사거리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1.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민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33, ***동 ****호(통진읍)	일시: 2017-06-08 05:12 장소: 가양대교 남단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7.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9. 30.
이승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2길 **, ***호 (독산동)	일시: 2017-06-13 01:18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7.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9. 30.
김진현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50, ***동 ***호 (다율동)	일시: 2017-07-03 20:12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 7.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9.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7.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9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776	2017.9.1.	주식회사 비스무트 정광현 110111-565668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407호 (마포동, 현대빌딩)
2	202777	2017.9.5.	엘에스빌드윈 주식회사 노정호 110111-1479909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406호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3	202778	2017.9.5.	주식회사 시온네트워크 김동현 110111-6261369	서울 구로구 새말로 25, 비동 101호, 102호(구로동, 구로에스케이뷰)
4	202779	2017.9.5.	주식회사 이비즈테크 이종우 110111-566649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0층 1003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연구개발타워)
5	202781	2017.9.6.	주식회사 에스엔에이 이원호 110111-2207599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55, 304, 305호 (성수동1가, 에스케이테크노빌딩)
6	202782	2017.9.6.	케이비드 주식회사 원용춘 110111-573359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2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7	202783	2017.9.8.	주식회사 엠큐닉 유승모 110111-5729805	서울 서초구 서운로 26-1, 3층, 4층 (서초동, 보일빌딩)
8	202784	2017.9.11.	주식회사 케이티스 박형출 110111-22715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0층 (여의도동, 주식회사케이티여의도빌딩)
9	202785	2017.9.11.	우성씨엔에스 주식회사 소병완 110111-2274035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5층 524호 (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10	202786	2017.9.11.	주식회사 수민텔레콤 이상민, 정창수 110111-4729012	서울 강동구 명일로 160, 2층(둔촌동)
11	202787	2017.9.7.	주식회사 서우이에프씨 박상진 11.01.11.6466430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3길 131, 1층(묵동)
12	202788	2017.9.7.	주식회사 로딕스 이승우 110111-3668435	서울 성동구 상원4길 6-1, 3층 (성수동1가, 태양빌딩)
13	202789	2017.9.12.	주식회사 이음테크넷 임봉순 110111-6391033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3, 203호 (성수동2가, 영동테크노타워)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4	202790	2017.9.13.	삼성전기산업(주) 정지혜 110111-0104797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 7, 6층(합정동)
15	202791	2017.9.14.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 최일성 110111-44049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2, 5층(대치동)
16	202792	2017.9.15.	주식회사 아이티로그인 김태현 110111-2511792	서울 용산구 원효로 138, 403호 (원효로3가, 청진빌딩)
17	202793	2017.9.18.	주식회사 건강기술단 김영규 110111-1926174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1, 707호 (용두동, 두산베어스타워)
18	202794	2017.9.18.	경안이앤지 주식회사 금동중 110111-281530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10, 310호 (광장동, 리버힐오피스텔)
19	202795	2017.9.21.	유비라커산업 주식회사 박성희 110111-2814633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09호 (영등포동8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20	202796	2017.9.21.	주식회사 디엔티솔루션 신상용 110111-6251394	서울 성북구 서경로 105, 4층(정릉동)
21	202797	2017.9.26.	주식회사 씨엠자산 강언석 110111-5787803	서울 중랑구 동일로 143길 19(중화동)
22	202798	2017.9.28.	세인트로그 주식회사 김세연 110111-646849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803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23	202799	2017.9.28.	주식회사 경지디앤에스 유성희 110111-3403641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107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95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515)	주연이엔에스㈜ (110111-4222058)	김미연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421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017.10.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9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방성배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일시 : 2017-08-04 16:09 장소 : 천호대교 내용 : 강원98바1232(트레일러)차량 총중량 6.85톤 초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인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일시 : 2017-08-11 16:32 장소 : 서울숲 내용 : 서울06파7784(덱프)차량 축하중 1.6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일시 : 2017-08-12 01:57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전북98사4840(트레일러)차량 총중량 28톤 초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11. 30.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01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결정」](안) 및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종로구 이화동(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구 역 명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학로 일대	438,593	감)11,507	427,086	-

나) 을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을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6가동 일대	458,360	감)12,020	446,340	-

다) 이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	증)236,670	236,670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건축과

5) 열람내용 : 이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6)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7)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496, FAX 02-2133-0742)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7-92호

도시관리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30호(2001.12.26.)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3호(2009.11.19.) 및 같은 고시 제2014-365호(2014.10.23.),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21호(2016.12.22.) 및 같은 고시 제2017-19호(2017.3.30.)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약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9.27.)를 통해 의결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중구 신당동 368-62번지 일원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C11	1	2,802.2	RC11	신당동	367-12	141.1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 (신당동 372-29)
					신당동	367-13	149.0	
					신당동	367-26	111.5	
					신당동	367-4	56.0	
					신당동	367-6	76.0	
					신당동	367-7	73.0	
					신당동	367-8	76.0	
					신당동	367-9	36.0	
					신당동	367-10	36.0	
					신당동	367-11	43.0	
					신당동	367-28	26.0	
					신당동	367-29	13.0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C11	1	2,802.2	RC11	신당동	367-33	46.0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 (신당동 372-29)
					신당동	367-34	13.0	
					신당동	368-52	68.1	
					신당동	368-62	36.7	
					신당동	368-63	59.4	
					신당동	372-29	(44.3)	
					신당동	372-40	127.5	
					신당동	372-41	33.0	
					신당동	372-1382	122.0	
					신당동	367-15	99.0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 (신당동 372-29)
					신당동	367-16	50.0	
					신당동	367-17	46.0	
					신당동	367-19	93.0	
					신당동	372-29	(52.0)	
					신당동	372-42	248.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6-1	125.3	
					신당동	372-2687	2.4	
					신당동	367-22	195.2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6-179	48.3	
					신당동	366-180	20.0	
					신당동	367-20	56.0	
					신당동	367-21	46.0	
					신당동	368-120	4.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7-24	20.0	
					신당동	368-73	20.0	
					신당동	368-74	264.4	
					신당동	368-119	26.0	
변경	C11	1	2,802.2	RC11	신당동	367-12	141.1	공동개발 권장
					신당동	367-13	149.0	
					신당동	367-26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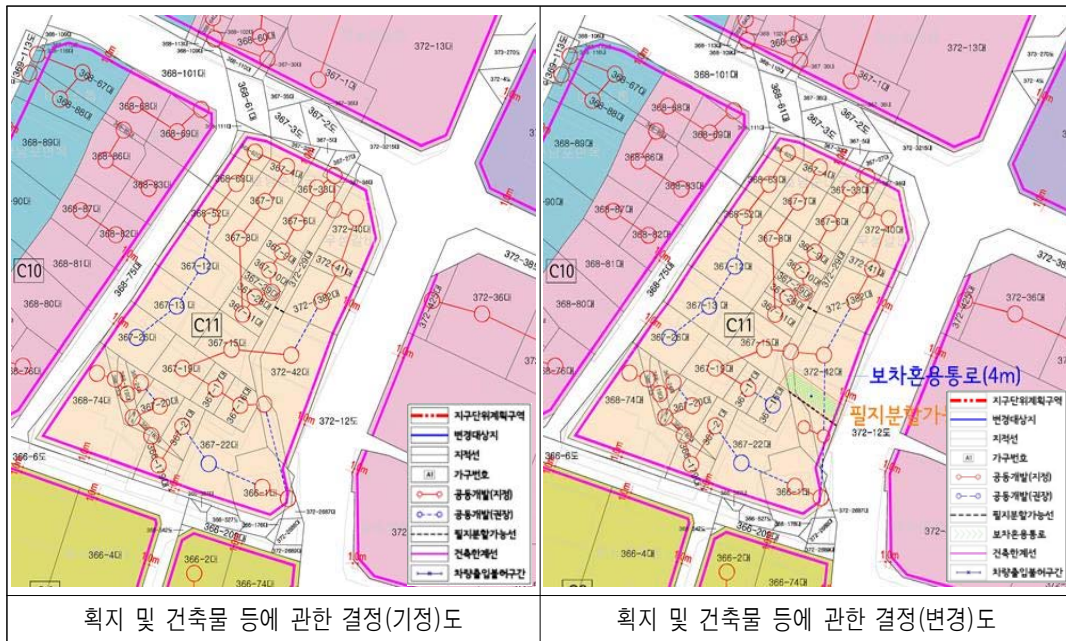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변경	C11	1	2,802.2	RC11	신당동	367-4	56.0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 (신당동 372-29)
					신당동	367-6	76.0	
					신당동	367-7	73.0	
					신당동	367-8	76.0	
					신당동	367-9	36.0	
					신당동	367-10	36.0	
					신당동	367-11	43.0	
					신당동	367-28	26.0	
					신당동	367-29	13.0	
					신당동	367-33	46.0	
					신당동	367-34	13.0	
					신당동	368-52	68.1	
					신당동	368-62	36.7	
					신당동	368-63	59.4	
					신당동	372-29	(44.3)	
					신당동	372-40	127.5	
					신당동	372-41	33.0	
					신당동	372-1382	122.0	
					신당동	367-15	99.0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 가능선(신당동 372-29, 372-42) , 보차혼용도로 (폭4m)
					신당동	367-17	46.0	
					신당동	367-19	93.0	
					신당동	372-29	(26.0)	
					신당동	372-42	(214.0)	
					신당동	366-1	125.3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72-2687	2.4	
					신당동	367-22	195.2	
					신당동	367-16	50.0	
					신당동	372-29	(26.0)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가능선 (신당동372-29, 372-42)
					신당동	372-42	(34.0)	
					신당동	366-179	48.3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6-180	20.0	
					신당동	367-20	56.0	
					신당동	367-21	46.0	
					신당동	368-120	4.0	
					신당동	367-24	20.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73	20.0	
					신당동	368-74	264.4	
					신당동	368-119	26.0	

※ 367-16번지와 367-17번지를 공동개발시 367-16번지 동측 보차혼용도로 폐지
 ※ 상기 필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당동 368-16, 372-42번지 일원	신당동 367-12, 372-42일원 공동 개발 변경, 필지분할 가능선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	- 약수시장의 재개발 구역내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일부 필지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공동개발 지정 범위를 변경, 필지분할 가능선 신설 및 제척필지 맹지발생에 따른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보차혼용통로는 367-16번지와 367-17번지를 공동개발시 폐지 조건임

3. 관계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중구청시 제2017-93호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 변경(폐지)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0-97번지 사도에 대하여 「사도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 변경(폐지)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중 구 청 장

1.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변경(폐지) 사유

- 대상 사도의 경우 신라호텔 부지 내에 설치되어 호텔 출입구로만 사용되는 도로로써 사도 폐지 후 신라호텔 대지와 합병할 예정이므로 사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짐.

2. 사도변경(폐지) 결정조서

구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폐지	6	35	장충동2가 200-81	장충동2가 206	

3. 관계도면 : 생략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광진구고시 제2017-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로 결정된 광진구 중곡동 273-1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 결정(광진구고시 제2017-56호, 2017.06.15.) 내용에 따라 중곡역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중곡동 273-1일대	4,925.73	증)245.56	5,171.29	1991.7.24. (건고 제399호)	• 중곡역(7호선) • 중곡역 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 입체적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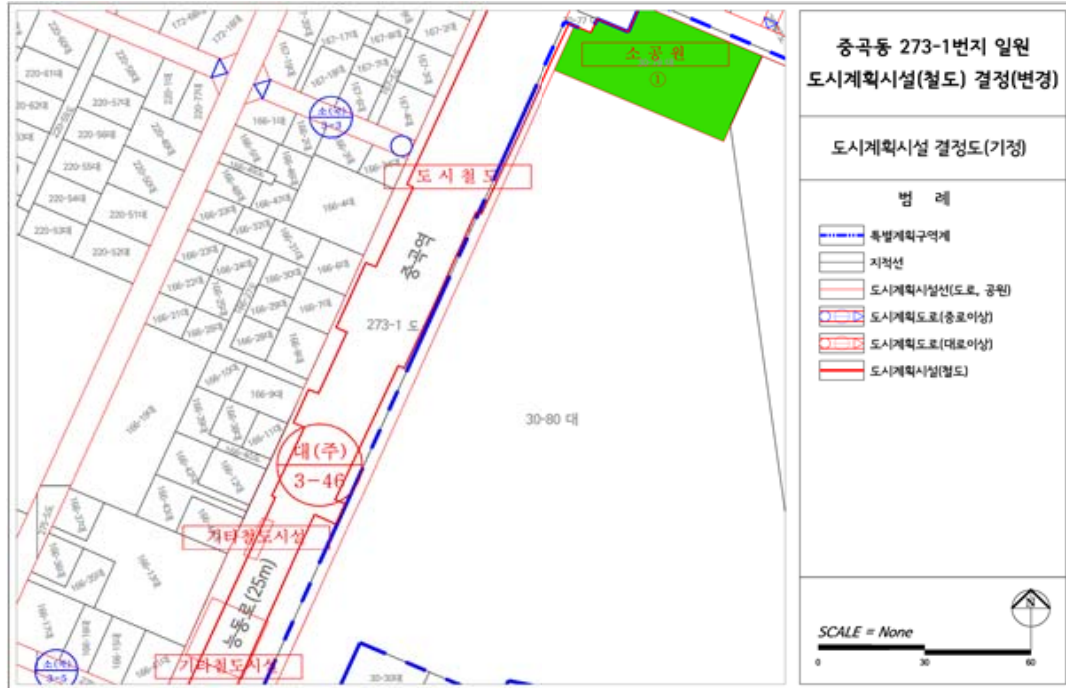
[illegible]

○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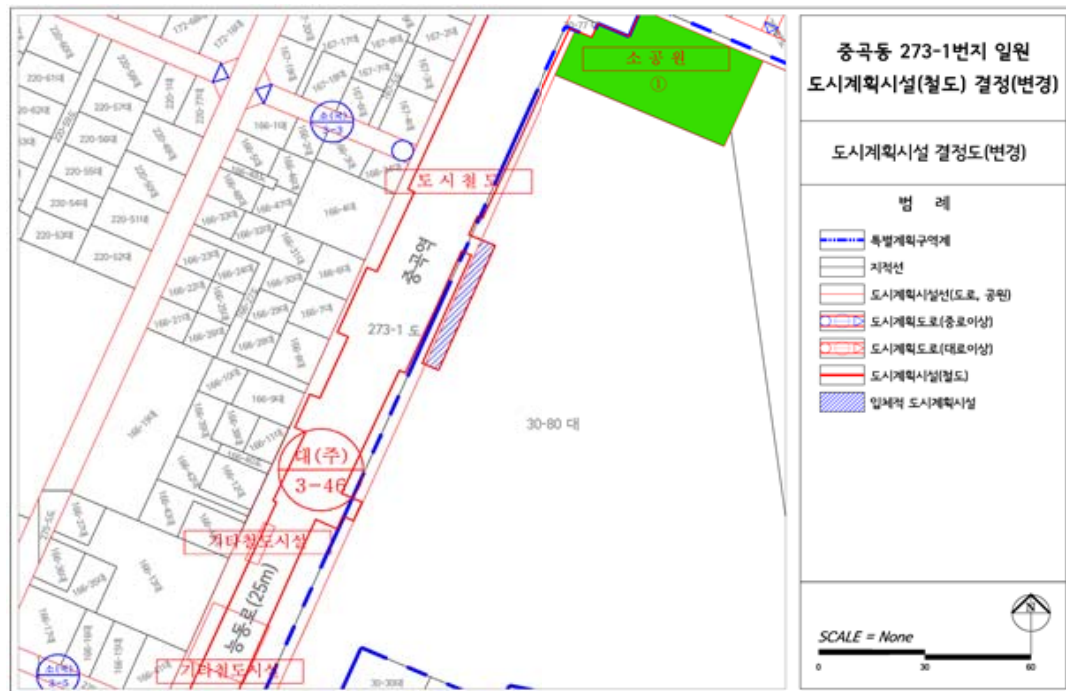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도 (도시철도)	- 중곡역 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 (증가) 245.56㎡ - 신설 출입구 : 214.89㎡ - 환기구 이설 : 30.67㎡ - 일부구간 입체적결정 : 166.09㎡	중곡역 역세권에 위치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광진구고시 제2017-56호, 2017.06.15.)에 의하여 지하철 출입구 설치위치가 결정되어 신규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하는 사항임.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450-76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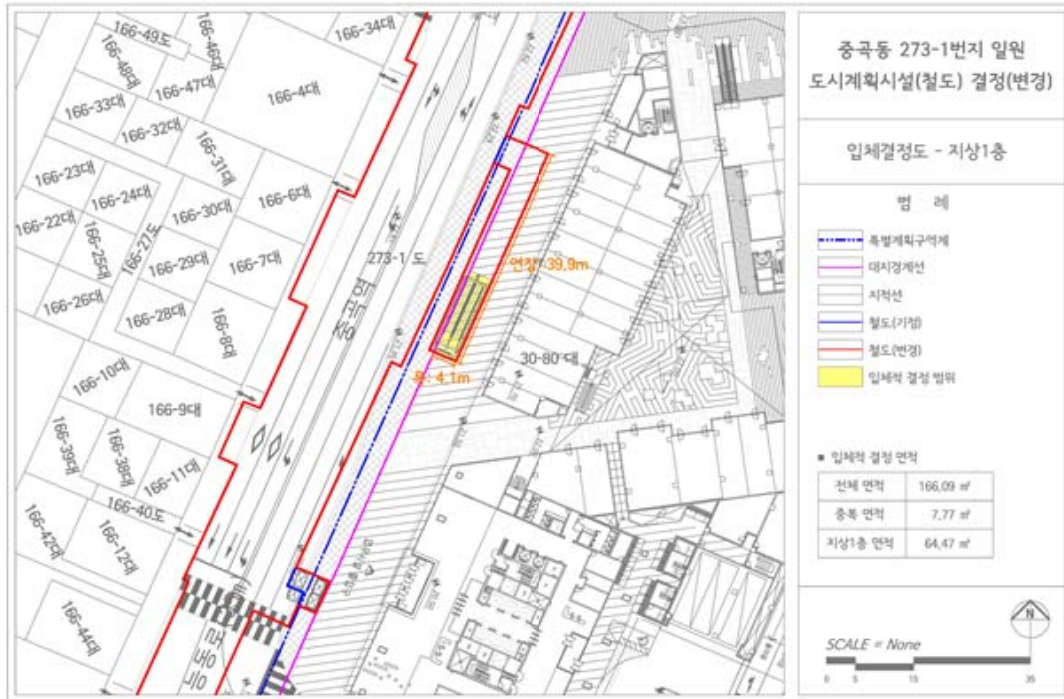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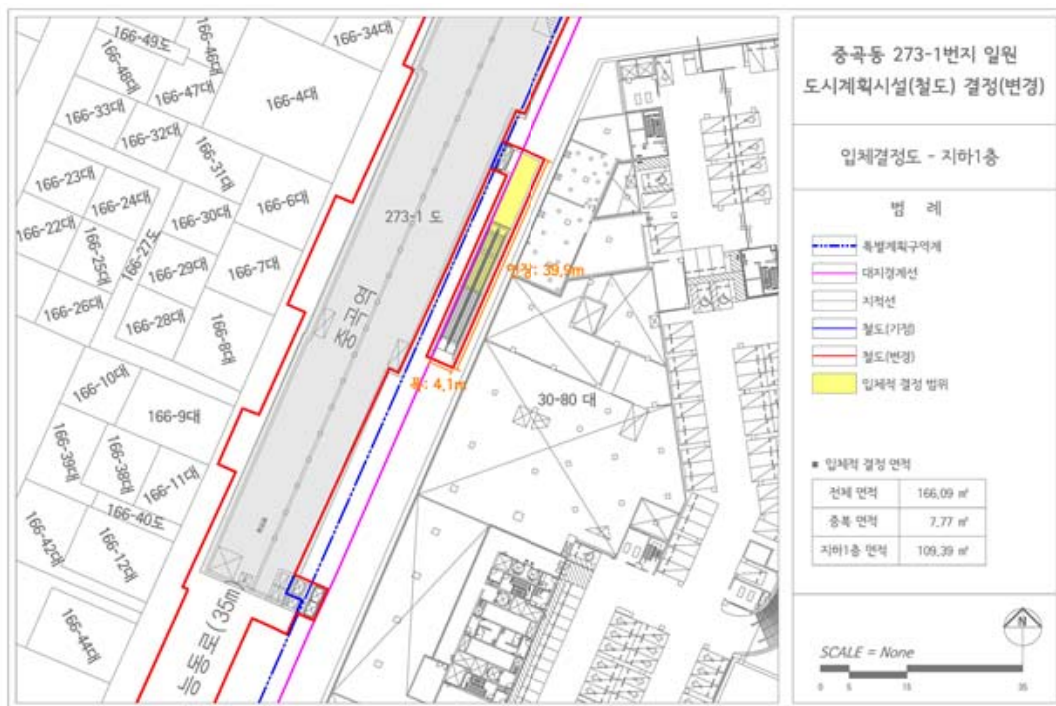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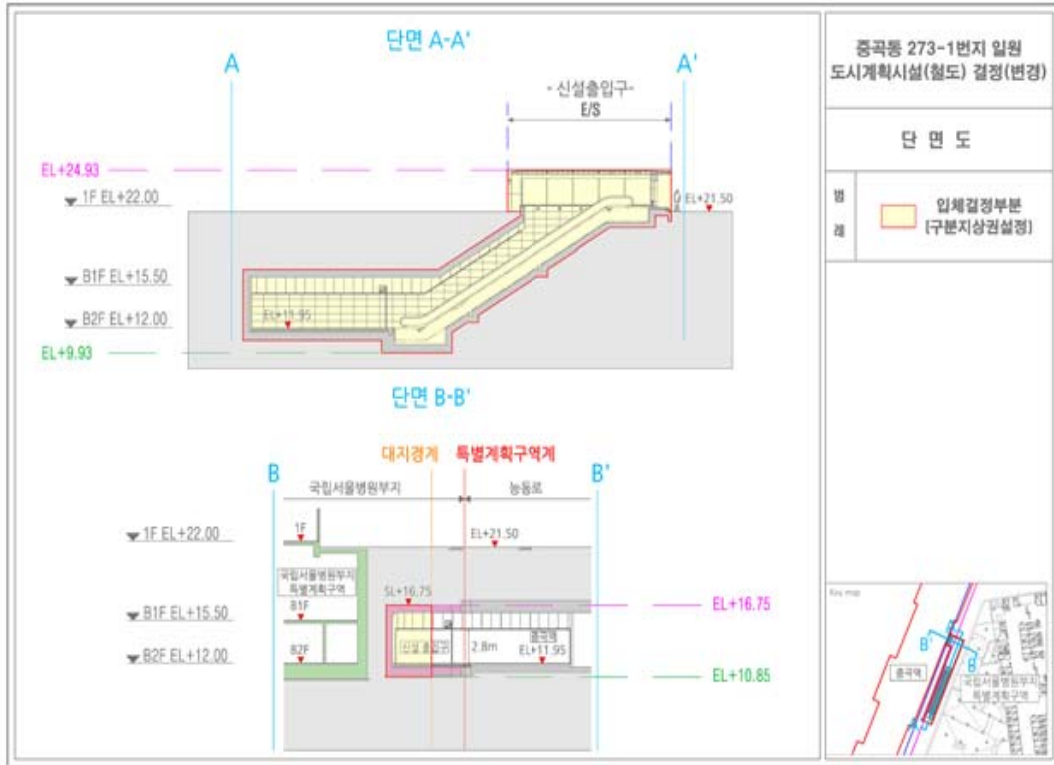
• 지상1층 입체결정도



• 지상2층 입체결정도



• 단면도



◆ 노원구고시 제2017-11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100호(2017.9.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7-802호(2017.09.28) 및 노원구공고 제2017-803호(2017.09.28)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회신을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2. 사업시행자
 - 성 명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701-1)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업
 - 사업의 명칭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 4. 사업의 내용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4㎡ [연면적 1,327㎡, 지하 1층, 지상 4층]
 - 재활용홍보전시관 410㎡ [연면적 675㎡, 지상 3층]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 7.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 8.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 9.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 02-2116-3188), 자원순환과(☎ 02-2116-3810)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상계동103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명 성	주 소	명 성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1035-3	전	934	934	.	홍경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803, 104-2201 (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상계동1035-3)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 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상계동1035-3	계근대	철재	1식	계근대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토목과 물건조서 반영됨
2	상계동1035-3	컨테이너	철재	15㎡	사무실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토목과 물건조서 반영됨
3	상계동1035-3	컨테이너 박스지붕	철재	1식	사무실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4	상계동1035-3	컨테이너박스 계단	철재	1식	사무실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5	상계동1035-3	재활용품선별 컨베이어벨트	철재	1식	선별기계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6	상계동1035-3	재활용품 분류칸막이	철재	1식	분류칸막이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7	상계동1035-3	경계담	철재	1식	경계담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8	상계동1035-3	경계담	철재	1식	경계담	이만복 (준희자원)	상계동 963-5					
9	상계동1035-3	재활용품 분류칸막이	철재	1식	분류칸막이	이만복 (준희자원)	상계동 963-5					토목과 물건조서 반영됨

◆ 서대문구고시 제2017-14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대현동 11-1번지 일대) [학교법인 이화학당 - 연구협력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명	대 지 위 치	사 업 내 용	사 업 시행자	비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 행 [학교]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일대	[이화여대 연구협력관]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등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12,404.78㎡ -용도 및 공종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 증축(별동) -건축규모 <table><tr><td>동명칭</td><td>층수</td><td>면적(㎡)</td></tr><tr><td>연구협력관</td><td>지하2층/지상4층</td><td>12,404.78</td></tr></table>	동명칭	층수	면적(㎡)	연구협력관	지하2층/지상4층	12,404.78	학교 법인 이화 학당	
동명칭	층수	면적(㎡)								
연구협력관	지하2층/지상4층	12,404.78								

나. 착수예정일 및 사용승인(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 16개월

이 문서는 서대문구청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7-1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법인 명지학원 - 교육복합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대 지 위 치	사 업 내 용	사 업 시행자	비 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행 『학교』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일대	【명지대 교육복합시설】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30,669.31㎡ - 용도 및 공종 : 교육연구시설 / 증축(별동)	학교법인 명지학원	

나. 착수예정일 및 사용승인(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 21개월

◆ 양천구고시 제2017-7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201호(1983.6.28)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번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목동 90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사업
- 명 칭 : 집단에너지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목동 900번지)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대지면적 : 53,344.3㎡(변경없음)
- 건축규모
 - 기정 : 8개동, 건축면적 9,491.12㎡ 연면적 20,699.95㎡
 - 변경 : 9개동, 건축면적 9,867.76㎡(증 376.64㎡) 연면적 21,412.23㎡(증 712.28㎡)
- 변경내용 : 1개동 증축(상세내용 비치도서 참조)

마. 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17월 11월
- 준공예정일 : 2018월 03월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양천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축과(☎02-2620-3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1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	대	53,344. 3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준공업지역	서울 에너지 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	-	-	-	

◆강서구고시 제2017-101호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02.11)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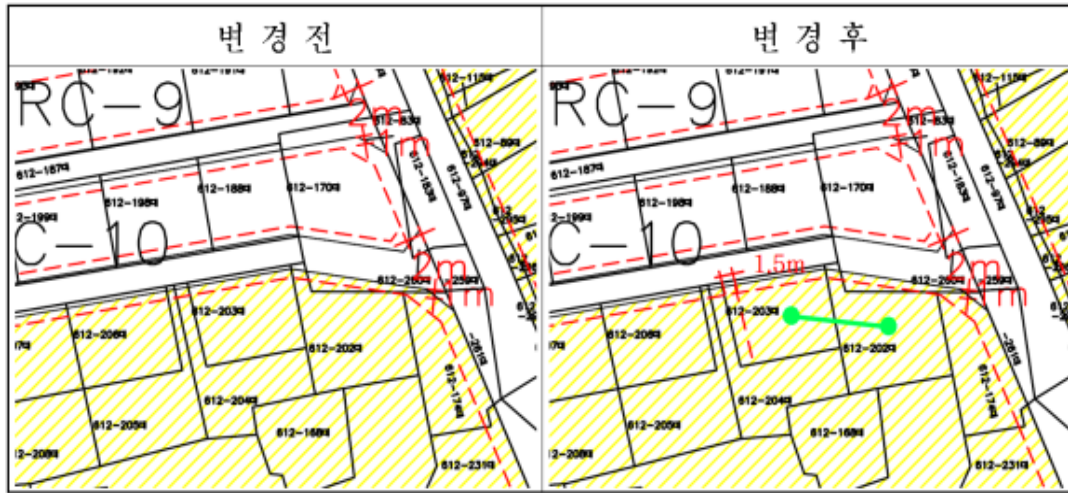
가.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위 치	지목	내 용	
		기 정	변 경
방화동 612-202	대	단독개발	공동개발
방화동 612-203	대	단독개발	

나.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 결정조서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방화동 612-203	-	건축한계선 1.5m 신설	보차혼용통로 구조로 조성 및 사용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 관악구고시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234호(2016.08.0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256호(2017.09.21)로 열람공고한 ‘관악산 신원동 동내뒷산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관악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관악산, 신원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59-5번지 일대
2) 면 적 : 280m²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계				280					
1	신림동 산159-46 (분할 전 지번 : 신림동 산159-5)	임야	28,655	280 (분할면적)	주식회사 동선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 (온의동)			

◆ 서초구고시 제2017-140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 2005-91호(2005.11.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60-27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23-16 등 5필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적 : 5,535㎡
- 나) 내용 : 토지보상
- ※ 변경사항 : 필지 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변경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계		22,379	5,535						
당초 1	서초동 산160-27	임야	16,328	1,17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4,936/16,328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길 9, ***호(***)	최정*	621.29/16,32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9,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김신*	591.79/16,32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동 ****호(망월동, 미사강변도시2단지)	김윤*	178.92/16,328	은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22, ***동 ***호(청담동, 우성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변경 1	서초동 산160-27	임야	16,328	1,170	상동				상동	
당초 2	반포동 산85-47	임야	910	765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60031, 4117 Bitternut Lane ATP *** Gunnee	이동*	2,245/2,245			
변경 2	반포동 산85-47	임야	765	765	상동					
당초 3	반포동 산89-3	임야	1,160	976	서울시 강남구 임구정로 201, **동 ***호(임구정동, 현대아파트)	남윤*	3,140/3,140			
변경 3	반포동 산89-3	임야	976	976	상동					
당초 4	방배동 산23-37	임야	2,060	1,732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11, ***호(마장동, 마장동해맞이아파트)	인영*	132.6/5,966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59번길 ***-(덕풍동)	손상*	132.6/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동 ****호 (석수동, 석수편한세상아파트)	최승*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1길 ***-(봉천동)	신철*	132.6/5,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1동 ***호(메탄동, 동남아파트)	이낙*	132.6/5,966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지분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당초 4 방배동 산23-37		임야	2,060	1,732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윤상*	132.6/5.966		
					서울 강동구 상암로11, ***동 ***호(암사동, 선서현대아파트)	전종*	132.6/5.96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 (우이동)	고종*	132.6/5.966		
					서울시 종로구 상봉로 131, *동 ***호(상봉동, 상봉 뉴트리시스)	이공*	132.6/5.96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1, ***동 ***호 (강현동, 청구아파트)	황선*	132.6/5.96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동 ***호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	이*	132.6/5.9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5, *동 ***호(오금동, 상아아파트)	김희*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최화*	132.5/5.96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동 ***호 (용현동,건영아파트)	관혁*	132.5/5.966	이전*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395번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80, ***호 (민촌동, 담터힐즈)	정환*	132.5/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65-13, ***동 ***호 (암사동, 암사9-편한세상)	연중*	169.4/5.966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95-6, ***호 (후평동)	박동*	169.4/5.966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동 ***호 (중동, 미리내마을)	민경*	169.4/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 ***동 ***호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최종*	169.4/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24, ***동 ***호 (분당동, 장인타운)	이용*	169.4/5.9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동 ***호 (잠실동, 리센츠)	이재*	169.4/5.9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81번길 **	김차*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5-1, ***호 (인양동)	권명*	191.5/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동 ***호(아침동, 장미마을)	김원*	191.5/5.966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66, ***동 ***호(호원동, 신일유빌아파트)	백규*	132.6/5.966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적	소유자	성명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당초	4	방배동 신23-37	2,060	서초구 방배동 964-24(42/6) 우림기든빌라 ***호	고무*	132.6/5,966	주소	권리의 종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27, ***동 ***호(신길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성금*	191.5/5,966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박노*	169.4/5,966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28, 112동 ***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이철*	132.6/5,966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동 ***호(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남영*	132.6/5,966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36, ***동 ***호(신곡동, 삼익아파트)	양**	132.5/5,966		
				경기도 의왕시 새롭길 21, ***동 ***호(포일동, 인덕원대우아파트 푸른마을)	이옥*	191.5/5,966		
				서울시 광진구 광니루로56길 29, *동 ***호(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한상*	169.4/11,932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호(임사동, 강동해미리)	김태*	169.4/11,9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동 ***호(신길동,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이순*	191.5/5,966		
변경	4	방배동 신23-37	1,732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20번길 27, *층동 ***호(보아주택)	윤원*	169.4/5,966	상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42, *동 ***호(관양동, 대왕아파트)	김명*	169.4/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김철*	191.5/5,966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2, ***동 ***호(문정동, 건영아파트)	이선*	663/29,83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동 ***호(서초동, 삼풍아파트)	이지*	169.4/5,966		
				상동			상동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5길 ** (홍제동)	박채*	1/4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5길 99, ***동 ***호(동소문동7가, 한신휴아파트)	현옥*	1/4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	한세*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동 ***호 (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노성*	1/16		
당초	5	방배동 신23-16	89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로 10, ***동 ***호(불당동, 불당리더힐스)	최영*	1/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통정9로 51, ***동 ***호(신방동, 천안신방푸르지오)	김혜*	1/1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동 ***호(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박성*	1/16		
변경	5	방배동 신23-16	892	상동				

◆ 서초구고시 제2017-1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청룡마을 간 보행자도로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J	2.5 ~6.3	특수 도로	28	신원동 248	신원동 269-11	보행자 전용도로	-	-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 3-J 호선	- 신설 - 폭원 : 2.5~6.3m - 연장 : 28m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와 청룡마을 간 사유지 일부를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도로(소로) 신설

2. 관계도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17-1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하고, 강북구고시 제 2015-234호(2015.10.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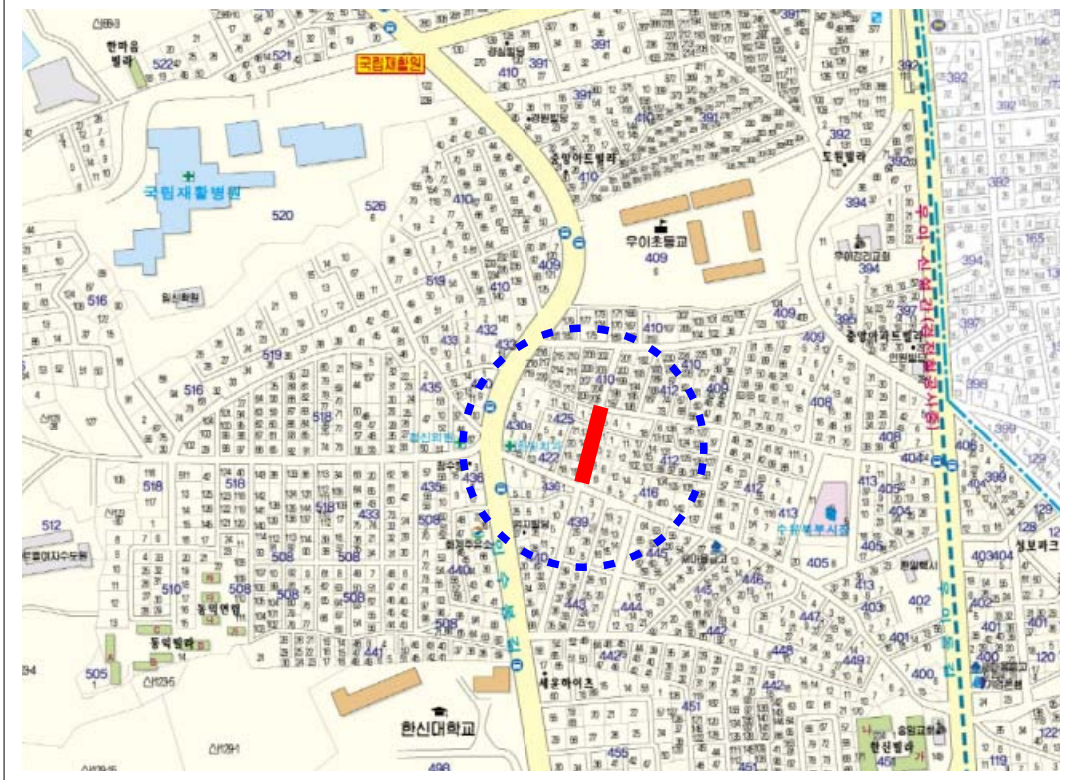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m)	실시계획 인가	사업 기간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공사	인수봉로52가길 27(수유동) ~ 인수봉로52가길 39(수유동)	폭 4→6m 연장 65m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5-234호 (2015.10. 8.)	2015.10. 8.~ 2017. 9. 26.

라. 붙임 : 위치도

위 치 도



◆ 노원구공고 제2017-8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3.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된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 8-3번지 외 8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 8-3 외 8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11,476㎡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조서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문화과 (☎ 2116 - 3787)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토지조서 (2017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보상대상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1	월계동	산8-12	임야	1,968	1,968	1,968	송영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길 **				산8-3에 서 분할
2	월계동	산13-5	임야	1,000	1,000	1,000	이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 ***동 호(월계동, 그랑빌 아파트)				산13에서 분할
3	월계동	산24-14	임야	1,200	1,200	1,200	조만형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번길 **, ***동 ****호(연동, e편한세상)				산24-1에 서 분할
4	월계동	산37-2	임야	1,203	1,203	1,203	문지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차산로 ***, **동 ****호(관장동, 위커힐아파트)				산24-1에 서 분할
5	월계동	산38-10	임야	293	293	293	한성식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 ***동 ****호(선동, 미사강변*자푸르지오)				
							학교법인경희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				산38-에 서 분할
							남정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가 ***				산41-3에 서 분할
							조규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 (면목동)				산41-3에 서 분할
							김광식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가 ***				산41-3에 서 분할
6	월계동	산41-7	임야	2,312	2,312	2,312	김영식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가 ***				산41-3에 서 분할
							김우식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번길 ** (감북동)				산41-3에 서 분할
							김태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번길 ** (고림동)				산41-3에 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모상예산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6	월계동	산41-7 입야	임야	2,312	2,312	2,312	김호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 ***호(고림동, 삼호맨션)				산41-3에 서 분할
							김현식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가길 ***-(연건동)				산41-3에 서 분할
							강성훈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 층 ***호 (수동시니어타운)				산41-3에 서 분할
							김영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상도동)				산41-3에 서 분할
							김학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동***-***				산41-3에 서 분할
							전병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				산41-3에 서 분할
							김학주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길,***동***호(삼전동 현대아파트)				산41-3에 서 분할
							김학임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동***호(방배동,삼환나미르빌)				산41-3에 서 분할
							김학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 (면목동)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713, 14층15층(월평동, 나라키움 대전센터)	산41-3에 서 분할	산41-3에 서 분할
							신명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 ***동 ***호(반포동, 반포자이)				산41-3에 서 분할
							송범진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정자일로***번길 *, ***동 ***호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산41-3에 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보상대상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6	월계동	산41-7	임야	2,312	2,312	2,312	유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길 ** (상도동)			산41-3에서 분할	
							최신영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로 **, ****동 ***호 (별내동, 별내아이파크)			산41-3에서 분할	
7	월계동	산47-1 4	임야	1,500	1,500	1,500	김정심	서울시강서구 양천로**가길**, **동****호 (염창동, 이너스내안에이파트)			산47-1에서 분할	
							류창수	서울시용산구 이촌로**가길**, ****동****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파트)			산47-1에서 분할	
							유세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 **동 ****호 (용신동*가 파크타워)			산47-1에서 분할	
							은영례	인천시연수구 해송로**번길**, **동****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아파트)			산47-1에서 분할	
8	월계동	산48-7	임야	1,000	1,000	1,000	윤영례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			산48에서 분할	
							양대영	서울시노원구 동일로***길***, **동****호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산48에서 분할	
							양대산	서울시노원구 초안산로*길**, **동****호 (월계동, 대우아파트)			산48에서 분할	
							양대석	서울시노원구 석계로**, **동****호 (월계동, 동현대아파트)			산48에서 분할	
							신희강	서울시강북구 오현로****, **동****호 (번동, 주공아파트)			산48에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모상예산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9	월계동	신68-3	임야	1,000	1,000	1,000	조재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동 ****호 (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				신68에서 분할
							영화기업㈜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로 ** (당산동*가)				신68에서 분할
							조영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신68에서 분할
							조승현	서울 강남구 학동로**길 **, ***호 (논현동,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논현)				신68에서 분할
							조동현	서울 강남구 학동로**길 **, ***호 (논현동,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논현)				신68에서 분할
							조주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길 **, ***호 (압구 정동, 대림빌라트)				신68에서 분할
							조상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길 **, ***호 (압구 정동, 대림빌라트)				신68에서 분할

◆ 강서구공고 제2017-138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42호(2017.9.28.)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강서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9-68번지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1,246.2㎡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 4,739.4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9.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02-2600-6071)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02-2600-6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연번	소6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이름	주소	관리의 종류	주소	성명	
1	화곡동 379-69	대	156.1	156.1	박정애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7(화곡동)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증권타운지점)	주식회사국 민은행	
2	화곡동 379-70	대	157	157			근저당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강서지점)	서울신용보 증재단	
3	화곡동 379-71	대	452.2	452.2	장희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푸르지오 119-1004	없음			
4	화곡동 379-72	대	109.1	109.1	권태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0,409호(충정로3 가,충정아파트)	근저당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276, 913동2201호(청계동,시 범우남퍼스트빌아파트)	임왕수	
5	화곡동 379-68	대	162.6	162.6		다세대주택				
6	화곡동 379-81	대	209.2	209.2		다세대주택				

[불건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이름	주 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1	화곡동 379-68	다세대 주택	40.56	연와조	서기성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79번지 68호	없음			
			40.56		김순영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22,103동206호 (안양동,삼성아파트)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남부법원지점)	주식회사신 한은행	
			40.56		박은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1, 1220호 (영등포동4가, 영등포대성그랑그루)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남부법원지점)	주식회사신 한은행	
			40.56		김운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30, 105동 1406호 (방배동, 방배1차현대아파트)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남부법원지점)	주식회사신 한은행	
			42		유형태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19가길 8-6 (화곡동)	없음			
			42		오중훈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305동1109호(사당동,사 당우성아파트)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남부법원지점)	주식회사신 한은행	
2	화곡동 379-81	다세대 주택	41.68	연와조	이규매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7길 12, 101호 (화곡동,우림빌라)	없음			
			41.54		노향호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7길 12, 102호 (화곡동)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광고지점)	주식회사국 민은행	
			41.68		정치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79-81	없음			
			41.54		정영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50가길 3-3(당산동6가)	없음			
			41.94		최종화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83,103동1702호(문정동,문정 래미안아파트)	없음			
			41.54		송재엽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23,103동701호(철산동,롯데 낙천대아파트)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남부법원지점)	주식회사신 한은행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이름	주 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3	화곡동 379-69, 70	근생	78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박정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79-70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증권타운지점)	주식회사국 민은행	
		근생	113.9							
		주차장	54				근저당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강서지점)	서울신용보 증재단	
		근생	165							
		근생	153.42							
		주택	80.1							
		옥탑	22.68							
4	화곡동 379-71	근관생 활시설	163.65	철근콘크리트조	장희중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119동 1004호 (화곡동,화곡푸르지오)	없음			
			141.19							
			17.98							
			170.91							
			27.5							
			17.98							
			225							
			195							
			30							
			225							
			225							
			27.98							
5	화곡동 379-72	근생	60.47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권태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0,409호(충정로3가, 충정아파트)	근저당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76,913동2201호 (청계동,시범우남퍼스트 빌아파트)	임왕수	
		근생	65.33							
		다가구	65.33							
		다가구	65.33							
		옥탑	21.6							

[영업권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이름	주 소	
1	화곡동 379-69,70	영업권	강화갯벌민물장어 영어조합법인	수산물유통가 공판매업	조강희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197	
		영업권	(주)덕진수산물통	수산물	정영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9길 55-10	
		영업권	여자만	음식점	박정애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7	
2	화곡동 379-71	영업권	대광비닐공업사	가공봉제업	한기선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9 라길 48-16 119-1004	
		영업권	아담방가구	가구업	최병용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1길 24-1	
		영업권	영당구장	당구장	유선식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길 9(신월동)	
		영업권	환경스포츠타문사	신문사	문달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3-1 문래현대5차아파트 502-1108	
		영업권	21환경교육중앙회	비영리법인	문달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3-1 문래현대5차아파트 502-1108	
		영업권	주식회사 한진이엔씨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안창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22동 504호	
		영업권			김형철	전남 목포시 호남동 308 36/5	
		영업권	현근이앤씨(주)	건설업	박흥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 217동 502호(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영업권	수인이앤씨 주식회사	건설업	정기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30번길 32 b동 303호 원종동 미성빌라	
		영업권	(주)이앤씨탄탄	건설업	소복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 217동 502호(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영업권	이글엔지니어링(주)	건설업	황인욱	인천시 서구 검단로 744번 3길 8 삼보해피하임 507동 102호	
		영업권	주식회사 에파타건설	건설업	남유나	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28길 13-8 (오류동)	
		영업권	(주)탄탄컨스텍	건설업	소영복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167	
		영업권	(주)탄탄종합개발	건설업	홍진희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49-7 계명아파트 201호	
		영업권	(주)에스와이컨스텍	건설업	박상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 217동 502호(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영업권	(주)승기건설	건설업	김동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519호	

◆ 강남구청 제2017-18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09(2015.09.0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42(2015.11.0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강남구 세곡동 산39~울현동 산32 일대 『은곡~방죽1마을 연결도로 확장개설』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코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m)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기간	비고
은곡~방죽1마을 연결도로 확장개설 공사	세곡동 산39임 ~울현동 산32임	폭 12m 연장 140.76m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42호 (2015.11.05.)	2015.04.19. ~2017.10.16	

라. 붙임 : 공사위치도

공 사 위 치 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노량대교)	선박 1척	노량대교 보수공사	2017.10.20.~ 2017.12.10.	2017. 10.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 2척	성산대교 복단 성능개선공사	2017.10.23.~ 2017.10.30.	2017. 10.23.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육군 제7903부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사서함 20006호(헌병단 군수과)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번지 일원
 - 면 적 : 1,487.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군·경 합동검문소 설치 및 정화조 배관 매설
 - 내 역 :
 - 철골구조물 1개소
 - 관로매설(L=250m, D=200mm)
5. 점용기간 : 2010.12.16.~2020.12.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서울환경운동연합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8번지 일원
 - 면 적 : 4.7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조형물 설치”
 - 내 역 :
 - 싸이클링 휴먼 조형물 1식(인간 조형물 3조)
5. 점용기간 : 2017.12.1.~2022.11.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5-2번지
 - 면 적 : 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 송수신탑 설치”
 - 내 역 :
 - PC PILE 1개소(H=15.0m)
5. 점용기간 : 2014.9.21.~2019.9.2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KT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65 KT해화빌딩 3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동작구 동작동 일원
- 면 적 : 3,721.88㎡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신관로 매설”
 - 내 역 :
 - 통신관로(D=2,220mm) L=1,233m
- 5. 점용기간 : 2017.8.31.~2022.8.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3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5(성내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57-7번지 일원
 - 면 적 : 4,202.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로공원 조성”
 - 내 역 :
 - 육각정자 1EA, 등 의자 3EA, 앉음벽 11m, 자전거 보관대 2EA
 - 생태계류 1식, 고무칩포장 206㎡, 우레탄 포장 70㎡
 - 녹지경계석 357m, 재료분리석 30m, 조경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1.12.07.~2016.12.06.
 <변경> 2016.12.07.~2021.12.0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3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 면 적 : 139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포토존 및 포토테크 설치”
 - 내 역 :
 - 점토블럭 포장 L=1,345m, 사고석 포장 L=38m
 - 테크설치 L=35m(3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1.11.27.~2016.11.26.
<변경> 2016.11.27.~2021.11.26.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